

행복한 다문화가정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 국제결혼 피해자 인터뷰 및 현장조사를 통한 정책제언 -

2007. 10. 17

국회의원 안 명 옥

2006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3만9천여 건으로 2006년 총 혼인건수(33만여 건)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민의 지속적 증가 속에 이들 이주민 가정에서 태어나는 2세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나면서 우리 사회는 다민족 사회로 급속히 접어들고 있습니다.

단일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해왔던 우리 사회는 다민족·다문화사회의 급속한 도래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고,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사회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동일한 국적의 남녀가 결혼을 해도 어려움이 많은 법인데, 일가친척 하나 없는 낯선 땅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사귀지도 않은 사람과 결혼해 가정을 꾸려나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주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새로운 세상에서의 행복과 성공을 꿈꾸며 낯선 땅으로의 결혼이주를 결심했던 동남아 출신 이주 여성들은 각종 차별과 가정폭력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입니다.

정부도 2006년부터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농림부 등 유관 12개 부처가 함께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 간 연계체계 부족으로 실질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자료집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현장조사 보고서입니다. 피해자들이 처한 삶의 현장을 조사하고 피해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이 천차만

별이고 문제 발생과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해결책도 획일적이고 단순화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합적인 판단과 맞춤형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개방화의 물결 속에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진행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지원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피해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된 본 자료집이 결혼 이주 여성의 안정적 정착과 행복한 다문화가정 구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0월

국회의원 **안명옥**

| | |
|---|-----------|
| I.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현 주소 | 1 |
| 1. 우리나라 국제결혼 현황 | 3 |
| 가. 연도별·성별 현황 | 3 |
| 나. 국적별 현황 | 4 |
| 다. 직업별 현황 | 6 |
| 2.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현황 | 9 |
| 3.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현황 | 11 |
| | |
| II.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유형 및 사례 | 15 |
| 1.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 | 17 |
| 2. 결혼중개업체로 인한 피해 | 23 |
| 3. 차별 및 성적 학대로 인한 피해 | 30 |
| 4. 경제적 불안과 체류문제로 인한 피해 | 35 |
| | |
| III. 정부의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정책 및 문제점 | 43 |
| 1. 정부의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정책 추진과정 | 45 |
| 2. 정부의 결혼이민자 지원 현황 | 49 |
| 가. 한국생활적응 및 정착지원 | 49 |
| 나.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한 지원 | 51 |
| 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53 |
| 라. 출산 및 자녀양육과 학교생활 적응지원 | 54 |
| 3.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정책의 문제점 | 56 |
| 가. 상업적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감독체계 미비 | 56 |
| 나.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 | 58 |
| 다.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체류 및 국적취득 문제 | 59 |

| | |
|--|------------|
| IV. 선진국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 63 |
| 1. 영 국 | 65 |
| 2. 프랑스 | 69 |
| 3. 독 일 | 73 |
| 4. 일 본 | 76 |
| 5. 대 만 | 82 |
| | |
| V. 행복한 다문화 가정구현을 위한 정책제언 | 89 |
| 1. 결혼이주민 여성을 활용한 통역인력 양성 | 91 |
| 2. 동일한 언어권 여성들의 쉼터 마련 | 93 |
| 3. 다민족·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 95 |
| 4.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관리제도 도입 | 97 |
| 5. 다양한 적응교육 지원 및 체류제도 개선 | 99 |
| | |
| VI. 참고문헌 | 101 |
| | |
| VII. 부 록 | 105 |
| 1. 국제결혼 피해 여성과의 인터뷰 : 인천·천안 쉼터 방문 | 107 |

행복한 다문화가정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I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현 주소

1. 우리나라 국제결혼 현황

가. 연도별 · 성별 현황

□ 1990년대 후반부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결혼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통계청의 혼인통계 결과(2007년 3월)에 따르면, 2006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39,690건으로 총 혼인건수의 11.9%를 차지함. 이는 2000년 12,319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 • 외국인과의 혼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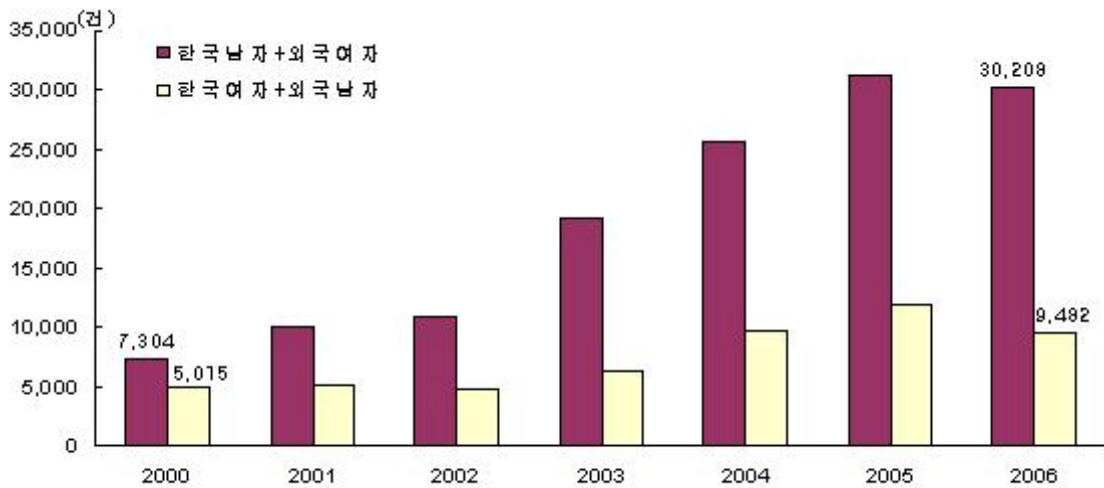
(단위 : 건, %)

|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총 혼인건수 | 334,030 | 320,063 | 306,573 | 304,932 | 310,944 | 316,375 | 332,752 |
| 외국인과의 혼인 | 12,319 | 15,234 | 15,913 | 25,658 | 35,447 | 43,121 | 39,690 |
| 총혼인건수대비 구 성 비 | 3.7 | 4.8 | 5.2 | 8.4 | 11.4 | 13.6 | 11.9 |
| 증 감 | 1,749 | 2,915 | 679 | 9,745 | 9,789 | 7,674 | -3,431 |
| 증 감 률 | 16.5 | 23.7 | 4.5 | 61.2 | 38.2 | 21.6 | -8.0 |
| ■ 한국남자+외국여자 | 7,304 | 10,006 | 11,017 | 19,214 | 25,594 | 31,180 | 30,208 |
| 증 감 률 | 26.5 | 37.0 | 10.1 | 74.4 | 33.2 | 21.8 | -3.1 |
| ■ 한국여자+외국남자 | 5,015 | 5,228 | 4,896 | 6,444 | 9,853 | 11,941 | 9,482 |
| 증 감 률 | 4.6 | 4.2 | -6.4 | 31.6 | 52.9 | 21.2 | -20.6 |

※ 자료 : 통계청, 「2006년 혼인통계 결과」, 2007. 3

□ 국제결혼 성별 추이를 보면, 2006년 ‘한국남자+외국여자’의 혼인은 30,208건, ‘한국여자+외국남자’는 9,482건임. ‘한국남자+외국여자’ 커플은 2000년 7,304건보다 4배 이상이며, ‘한국여자+외국남자’ 커플은 2000년 5,015건의 2배 정도에 달함. 특히 ‘한국남자+외국여자’의 결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 •



※ 자료 : 통계청, 「2006년 혼인통계 결과」, 2007. 3

나. 국적별 현황

□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은 1990년대 초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1999년 이후 국제결혼 알선업체의 증가와 함께 더욱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임. 최근에는 내국인과 이혼한 남성들이 재혼의 수단으로 국제결혼을 적극 활용하기도 함.

- 국내로의 결혼이주는 주로 결혼중개업체의 소개 외에 아는 사람의 소개, 직접 만남, 종교단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혼인은 주로 베트남, 몽골, 구소련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남¹⁾. 아는 사람의 소개로 혼인한 경우는 중국동포나 한족 여성에게 많고, 직접 만남의 경우는 한족과 몽골여성, 종교단체를 통한 경우는 일본, 필리핀, 태국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남.
- 국적별 세부현황을 보면, 2006년 한국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 중 중국 여성은 14,608명으로 48.4%를 차지했고, 베트남(33.5%), 일본(4.9%), 필리핀(3.8%) 순으로 나타남. 2006년 중국 여성의 수는 2005년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으나 혼인한 외국인 처의 81.9%가 중국과 베트남 여성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 ●

(단위 : 건, %)

|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구성비 | 전년대비 증감률 |
|---------|-------|--------|--------|--------|--------|--------|--------|-------|-------------|
| 계 | 7,304 | 10,006 | 11,017 | 19,214 | 25,594 | 31,180 | 30,208 | 100.0 | -3.1 |
| 중 국 | 3,586 | 7,001 | 7,041 | 13,373 | 18,527 | 20,635 | 14,608 | 48.4 | -29.2 |
| 베 트 남 | 95 | 134 | 476 | 1,403 | 2,462 | 5,822 | 10,131 | 33.5 | 74.0 |
| 일 본 | 1,131 | 976 | 959 | 1,242 | 1,224 | 1,255 | 1,484 | 4.9 | 18.2 |
| 필 리 핀 | 1,358 | 510 | 850 | 944 | 964 | 997 | 1,157 | 3.8 | 16.0 |
| 몽 골 | 77 | 118 | 195 | 318 | 504 | 561 | 594 | 2.0 | 5.9 |
| 캄 보 디 아 | * | * | * | 19 | 72 | 157 | 394 | 1.3 | 151.0 |
| 미 국 | 235 | 265 | 267 | 323 | 344 | 285 | 334 | 1.1 | 17.2 |
| 우즈베키스탄 | 43 | 66 | 183 | 329 | 247 | 333 | 314 | 1.0 | -5.7 |
| 기 타 | 779 | 936 | 1,046 | 1,263 | 1,250 | 1,135 | 1,192 | 3.9 | 5.0 |

※ 자료 : 통계청, 「2006년 혼인통계 결과」, 2007. 3

* 기타에 포함

1) 이해경, 경기개발연구원, 「패러다임의 변화와 여성·청소년의 도전」, 제 7장, 2006

다. 직업별 현황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에 혼인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남자 8,596명 중 3,525명(41%)이 외국여자와 혼인함. 이는 2005년보다 5.1% 증가한 수치임.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것은 한국인 배우자를 구하기 힘든 농어촌 총각들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임. 2006년 시도별 혼인 중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와의 혼인구성비는 전남이 15.1%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12.9%), 경북(11.7%), 충남(11.0%), 경남(10.8%), 충북(10.3%) 등도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외국여자와의 혼인 중 농림어업 종사자 남자 비율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에서 20%를 초과하였음. 이는 여성 배우자를 구하기 힘든 농어촌지역의 특성상 외국 여자와의 혼인이 주로 농림어업 종사자와의 혼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줌.

• • 농림어업종사자(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 • •

(단위 : 건, %)

| 구분 | 2005 | | | | | | | | 2006 | | | | | | | |
|-----|------------|--------------------|-------------------------|----------------|------------------|------------------|------------------|------------------|------------|--------------------|-------------------------|----------------|------------------|------------------|------------------|------------------|
| | 총혼인 (A) | 외국女 외혼인 남(B) | 외국女 농 외혼인 남(D) | 농림 남 (C) | 구성 비 (B/A) | 구성 비 (D/B) | 구성 비 (D/C) | 구성 비 (C/A) | 총혼인 (A) | 외국女 외혼인 남(B) | 외국女 농 외혼인 남(D) | 농림 남 (C) | 구성 비 (B/A) | 구성 비 (D/B) | 구성 비 (D/C) | 구성 비 (C/A) |
| | | | | | | | | | | | | | | | | |
| 전국* | 316,375 | 31,180 | 2,885 | 8,027 | 9.9 | 9.3 | 35.9 | 2.5 | 332,752 | 30,208 | 3,525 | 8,596 | 9.1 | 11.7 | 41.0 | 2.6 |
| 서울 | 71,286 | 7,637 | 46 | 129 | 10.7 | 0.6 | 35.7 | 0.2 | 73,924 | 6,168 | 54 | 149 | 8.3 | 0.9 | 36.2 | 0.2 |
| 부산 | 18,973 | 1,408 | 50 | 248 | 7.4 | 3.6 | 20.2 | 1.3 | 20,017 | 1,468 | 43 | 216 | 7.3 | 2.9 | 19.9 | 1.1 |
| 대구 | 13,152 | 1,014 | 39 | 83 | 7.7 | 3.8 | 47.0 | 0.6 | 13,892 | 1,070 | 41 | 93 | 7.7 | 3.8 | 44.1 | 0.7 |
| 인천 | 16,515 | 2,015 | 54 | 156 | 12.2 | 2.7 | 34.6 | 0.9 | 17,261 | 1,572 | 47 | 124 | 9.1 | 3.0 | 37.9 | 0.7 |
| 광주 | 7,827 | 498 | 23 | 64 | 6.4 | 4.6 | 35.9 | 0.8 | 8,487 | 643 | 26 | 65 | 7.6 | 4.0 | 40.0 | 0.8 |
| 대전 | 9,035 | 779 | 23 | 60 | 8.6 | 3.0 | 38.3 | 0.7 | 9,502 | 687 | 16 | 40 | 7.2 | 2.3 | 40.0 | 0.4 |
| 울산 | 6,939 | 560 | 25 | 59 | 8.1 | 4.5 | 42.4 | 0.9 | 7,493 | 620 | 24 | 69 | 8.3 | 3.9 | 34.8 | 0.9 |
| 경기 | 72,431 | 7,341 | 274 | 900 | 10.1 | 3.7 | 30.4 | 1.2 | 77,231 | 6,492 | 289 | 933 | 8.4 | 4.5 | 31.0 | 1.2 |
| 강원 | 8,496 | 769 | 166 | 505 | 9.1 | 21.6 | 32.9 | 5.9 | 8,731 | 795 | 189 | 517 | 9.1 | 23.8 | 36.6 | 5.9 |
| 충북 | 8,390 | 920 | 192 | 415 | 11.0 | 20.9 | 46.3 | 4.9 | 9,291 | 953 | 208 | 470 | 10.3 | 21.8 | 44.3 | 5.1 |
| 충남 | 12,107 | 1,378 | 370 | 894 | 11.4 | 26.9 | 41.4 | 7.4 | 13,373 | 1,472 | 395 | 958 | 11.0 | 26.8 | 41.2 | 7.2 |
| 전북 | 10,196 | 1,385 | 319 | 754 | 13.6 | 23.0 | 42.3 | 7.4 | 10,429 | 1,343 | 341 | 772 | 12.9 | 25.4 | 44.2 | 7.4 |
| 전남 | 9,984 | 1,327 | 428 | 1,088 | 13.3 | 32.3 | 39.3 | 10.9 | 10,507 | 1,582 | 598 | 1,272 | 15.1 | 37.8 | 47.0 | 12.1 |
| 경북 | 14,639 | 1,489 | 482 | 1,105 | 10.2 | 32.4 | 43.6 | 7.5 | 16,178 | 1,885 | 645 | 1,285 | 11.7 | 34.2 | 50.2 | 7.9 |
| 경남 | 18,664 | 1,636 | 338 | 844 | 8.8 | 20.7 | 40.0 | 4.5 | 20,789 | 2,240 | 547 | 1,039 | 10.8 | 24.4 | 52.6 | 5.0 |
| 제주 | 3,382 | 231 | 53 | 276 | 6.8 | 22.9 | 19.2 | 8.2 | 3,576 | 277 | 60 | 287 | 7.7 | 21.7 | 20.9 | 8.0 |

※ 자료 : 통계청, 「2006년 혼인통계 결과」, 2007. 3

* 국외 포함

□ 2006년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남자와 혼인한 외국여자의 국적을 보면 베트남 여성이 2,394건으로 전체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2005년 1,535건(약 53%)보다 859건이나 증가한 것임. 반면 중국 및 필리핀 여성은 전년 대비 13.74%, 2.04%씩 감소하였음.

●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남자와 혼인한 외국여자의 국적별 혼인건수 ● ●

(단위 : 건, %)

| 국 적 | 2005 | | | | | 2006 | | | | |
|-----|-------|-------|-------|-------|------|-------|-------|-------|-------|------|
| | 계 | 베 트 남 | 중 국 | 필 리 핀 | 기 타 | 계 | 베 트 남 | 중 국 | 필 리 핀 | 기 타 |
| 건 수 | 2,885 | 1,535 | 984 | 198 | 168 | 3,525 | 2,394 | 718 | 170 | 243 |
| 비 율 | 100 | 53.21 | 34.11 | 6.86 | 5.82 | 100 | 67.92 | 20.37 | 4.82 | 6.89 |

※ 자료 : 통계청, 「2006년 혼인통계 결과」, 2007. 3, 안명옥의원 재정리

2.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현황

- 국제결혼의 증가는 자연스레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아동들을 위한 정책이 더욱 시급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교에 취학하는 다문화가정 자녀 수는 매년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 2007년은 전년도 대비 68.1%가 늘어난 13,445명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음.

• • 다문화가정 자녀 재학현황 • •

(단위 : 명, %)

| 연 도 | 초 | | 중 | | 고 | | 계 | |
|------|--------|-------|-------|-------|-----|-------|--------|-------|
| | 인원 | 증감(%) | 인원 | 증감(%) | 인원 | 증감(%) | 인원 | 증감(%) |
| 2005 | 5,332 | | 583 | | 206 | | 6,121 | |
| 2006 | 6,795 | 27.4 | 924 | 58.5 | 279 | 35.4 | 7,998 | 30.6 |
| 2007 | 11,444 | 68.4 | 1,588 | 71.9 | 413 | 48.0 | 13,445 | 68.1 |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2007.5

- 피부색깔과 말투 그리고 정서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늘어나는 국제결혼가정의 아이들에 비해 학교도 교사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교육 현실은 혼혈이라는 이유만으로 따돌림 당하고 차별받는 어린이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음.

□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시·도별 현황을 보면 국제결혼가정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8.0%(11,825명)로 나타남. 국제결혼가정 학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이고, 전남·서울·경남·충남·전북지역 순으로 집계됨. 특히 중·고등학생의 수보다 초등학생의 수가 많은데, 이는 앞으로 국제결혼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 및 사회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 주는 것임.

• • 국제결혼가정 자녀 시·도별 학교급별 현황 • •

| 구분 시도 |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 | | |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 | | |
|----------|------------|-------|------|--------|-------------|-------|-------|--------|
| | 초 | 중 | 고 | 계 | 초 | 중 | 고 | 계 |
| 서울 | 1,040 | 234 | 73 | 1,347 | 828 | 163 | 44 | 1,035 |
| 부산 | 391 | 67 | 25 | 483 | 335 | 44 | 12 | 391 |
| 대구 | 283 | 33 | 8 | 324 | 237 | 26 | 4 | 267 |
| 인천 | 421 | 54 | 20 | 495 | 382 | 47 | 19 | 448 |
| 광주 | 279 | 32 | 11 | 322 | 267 | 31 | 7 | 305 |
| 대전 | 191 | 30 | 9 | 230 | 172 | 28 | 6 | 206 |
| 울산 | 177 | 22 | 4 | 203 | 176 | 14 | 4 | 194 |
| 경기 | 2,283 | 460 | 127 | 2,870 | 1,936 | 369 | 85 | 2,390 |
| 강원 | 729 | 67 | 11 | 807 | 705 | 64 | 9 | 778 |
| 충북 | 642 | 66 | 15 | 723 | 613 | 54 | 10 | 677 |
| 충남 | 950 | 131 | 35 | 1,116 | 930 | 14 | 6 | 950 |
| 전북 | 970 | 99 | 10 | 1,079 | 950 | 95 | 7 | 1,052 |
| 전남 | 1,361 | 101 | 17 | 1,479 | 1,307 | 99 | 15 | 1,421 |
| 경북 | 651 | 53 | 18 | 722 | 618 | 40 | 8 | 666 |
| 경남 | 968 | 125 | 27 | 1,120 | 849 | 89 | 18 | 956 |
| 제주 | 108 | 14 | 3 | 125 | 82 | 5 | 2 | 89 |
| 계 | 11,444 | 1,588 | 413 | 13,445 | 10,387 | 1,182 | 256 | 11,825 |
| 비율 | 85.1% | 11.8% | 3.1% | 100% | 90.8% | 74.4% | 62.0% | 88.0% |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2007.5

※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비율은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대비 임.

3.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현황

- 2006년 국제결혼이 2005년에 비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은 6,280건으로 2005년의 4,278건보다 2,002건 (46.8%) 증가함. 이는 국내 총 이혼 125,032건의 5.0%를 차지하는 수치임.
- 특히 한국남편과 외국인 처의 이혼이 4,010건으로 2005년보다 64.1% 증가했고, 한국인 처와 외국인남편의 이혼도 점점 늘어나면서 2006년 2,270건으로 국내 총 이혼의 1.8%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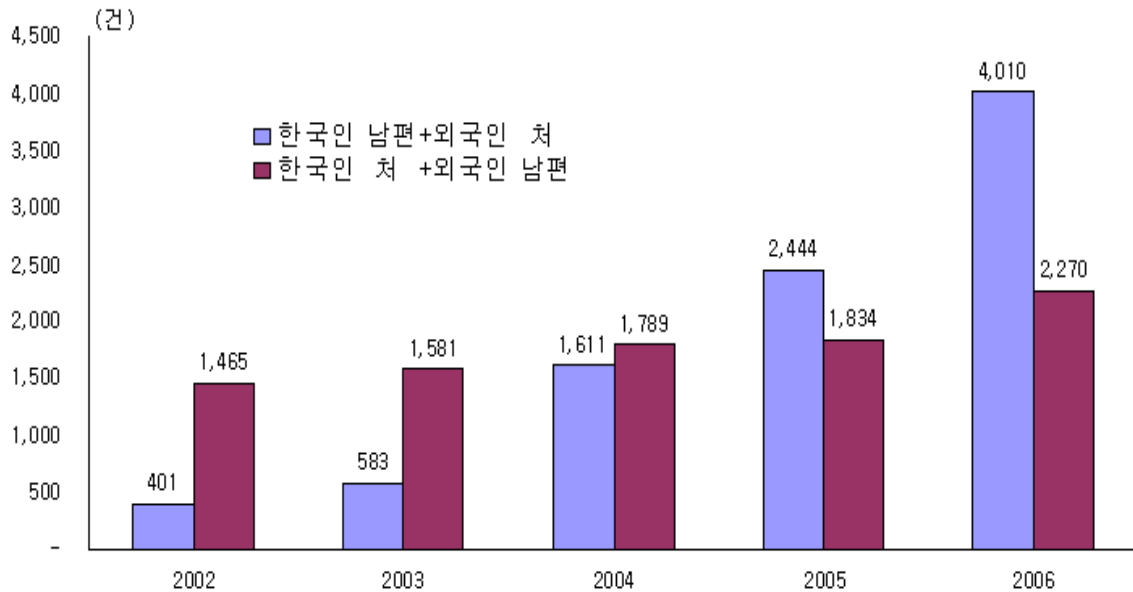
• •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 •

(단위 : 건, %)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총 이혼(A) | 145,324 | 167,096 | 139,365 | 128,468 | 125,032 |
| ▪ 외국인과의 총 이혼(B=C+D) | 1,866 | 2,164 | 3,400 | 4,278 | 6,280 |
| 총 이혼 대비 구성비(B/A) | 1.3 | 1.3 | 2.4 | 3.3 | 5.0 |
| 증 감 | - | 298 | 1,236 | 878 | 2,002 |
| 증 감 률 | - | 16.0 | 57.1 | 25.8 | 46.8 |
| · 한국인 남편+외국인 처(C) | 401 | 583 | 1,611 | 2,444 | 4,010 |
| 총 이혼 대비 구성비(C/A) | 0.3 | 0.3 | 1.2 | 1.9 | 3.2 |
| 증 감 률 | - | 45.4 | 176.3 | 51.7 | 64.1 |
| · 한국인 처+외국인 남편(D) | 1,465 | 1,581 | 1,789 | 1,834 | 2,270 |
| 총 이혼 대비 구성비(D/A) | 1.0 | 0.9 | 1.3 | 1.4 | 1.8 |
| 증 감 률 | - | 7.9 | 13.2 | 2.5 | 23.8 |

※ 자료 : 통계청, 「2006년 이혼통계 결과」, 2007. 4

• •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추이 • •



※ 자료 : 통계청, 「2006년 이혼통계 결과」, 2007. 4

□ 2006년 시도별 외국인 처와의 이혼은 전남 4.6%, 충북과 전북 4.3%, 경북 4.1% 순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국제이혼이 농촌 지역에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 한국인남편과 외국인 처, 한국인 처와 외국인남편의 시도별 이혼 • •

(단위 : 건, %)

| | 2005년 | | | 2006년 | | | 2005년 | | | 2006년 | | |
|-----|---------|-----------|-----|---------|-----------|-----|---------|-----------|-----|---------|-----------|-----|
| | 이혼 건수 | 한국남편+외국인처 | 구성비 | 이혼 건수 | 한국남편+외국인처 | 구성비 | 이혼 건수 | 외국남편+한국인처 | 구성비 | 이혼 건수 | 외국남편+한국인처 | 구성비 |
| 전국* | 128,468 | 2,444 | 1.9 | 125,032 | 4,010 | 3.2 | 128,468 | 1,834 | 1.4 | 125,032 | 2,270 | 1.8 |
| 서울 | 25,300 | 536 | 2.1 | 24,354 | 791 | 3.2 | 25,936 | 522 | 2.0 | 25,115 | 630 | 2.5 |
| 부산 | 9,905 | 124 | 1.3 | 8,953 | 277 | 3.1 | 9,961 | 119 | 1.2 | 8,897 | 128 | 1.4 |
| 대구 | 5,916 | 69 | 1.2 | 5,490 | 140 | 2.6 | 6,102 | 30 | 0.5 | 5,598 | 37 | 0.7 |
| 인천 | 8,646 | 136 | 1.6 | 8,132 | 214 | 2.6 | 8,761 | 70 | 0.8 | 8,301 | 118 | 1.4 |
| 광주 | 3,127 | 45 | 1.4 | 2,974 | 85 | 2.9 | 3,334 | 18 | 0.5 | 3,094 | 18 | 0.6 |
| 대전 | 3,328 | 68 | 2.0 | 3,287 | 108 | 3.3 | 3,426 | 17 | 0.5 | 3,369 | 41 | 1.2 |
| 울산 | 2,780 | 42 | 1.5 | 2,825 | 74 | 2.6 | 2,752 | 4 | 0.1 | 2,790 | 9 | 0.3 |
| 경기 | 30,358 | 531 | 1.7 | 30,003 | 840 | 2.8 | 30,613 | 338 | 1.1 | 29,979 | 380 | 1.3 |

| | 2005년 | | | 2006년 | | | 2005년 | | | 2006년 | | |
|-----|----------|---------------|---------|----------|---------------|---------|----------|---------------|---------|----------|---------------|---------|
| | 이혼 건수 | 한국남편+ 외국인처 | 구성 비 | 이혼 건수 | 한국남편+ 외국인처 | 구성 비 | 이혼 건수 | 외국남편+ 한국인처 | 구성 비 | 이혼 건수 | 외국남편+ 한국인처 | 구성 비 |
| 전국* | 128,468 | 2,444 | 1.9 | 125,032 | 4,010 | 3.2 | 128,468 | 1,834 | 1.4 | 125,032 | 2,270 | 1.8 |
| 강원 | 4,105 | 89 | 2.2 | 3,985 | 108 | 2.7 | 3,827 | 28 | 0.7 | 3,751 | 24 | 0.6 |
| 충북 | 3,469 | 98 | 2.8 | 3,438 | 149 | 4.3 | 3,333 | 16 | 0.5 | 3,241 | 35 | 1.1 |
| 충남 | 4,594 | 118 | 2.6 | 4,647 | 168 | 3.6 | 4,371 | 19 | 0.4 | 4,308 | 36 | 0.8 |
| 전북 | 4,471 | 94 | 2.1 | 4,448 | 193 | 4.3 | 4,289 | 27 | 0.6 | 4,111 | 40 | 1.0 |
| 전남 | 4,394 | 96 | 2.2 | 4,423 | 202 | 4.6 | 3,838 | 15 | 0.4 | 3,790 | 31 | 0.8 |
| 경북 | 5,828 | 117 | 2.0 | 5,604 | 228 | 4.1 | 5,434 | 23 | 0.4 | 5,032 | 39 | 0.8 |
| 경남 | 7,844 | 135 | 1.7 | 7,603 | 247 | 3.2 | 7,572 | 34 | 0.4 | 7,287 | 47 | 0.6 |
| 제주 | 1,663 | 35 | 2.1 | 1,613 | 50 | 3.1 | 1,612 | 25 | 1.6 | 1,563 | 29 | 1.9 |

※ 자료 : 통계청, 「2006년 이혼통계 결과」, 2007. 4

* 국외 포함

주) 한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 주소지 기준임

□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외국인 처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 2,551건(63.6%), 베트남 610건(15.2%), 일본 202건(5.0%), 필리핀 171건(4.3%)으로 나타남. 베트남 출신 처는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11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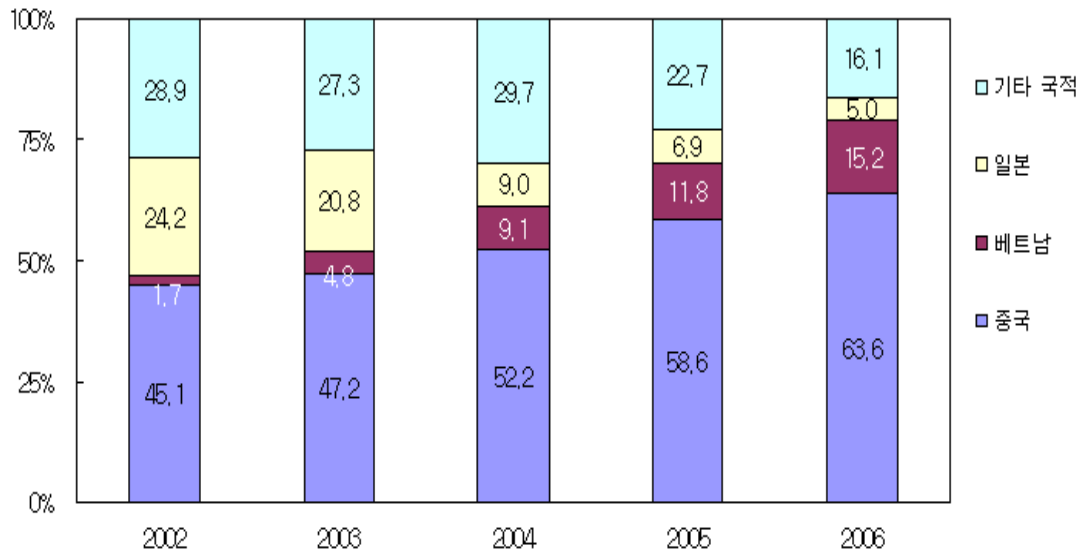
• • 외국인 처의 국적별 이혼건수 및 구성비 • •

(단위 : 건, %)

| | 2002 | | 2003 | | 2004 | | 2005 | | 2006 | | 증감률 |
|--------|------|-------|------|-------|-------|-------|-------|-------|-------|-------|-------|
| | 건수 | 구성비 | 건수 | 구성비 | 건수 | 구성비 | 건수 | 구성비 | 건수 | 구성비 | |
| 계 | 401 | 100.0 | 583 | 100.0 | 1,611 | 100.0 | 2,444 | 100.0 | 4,010 | 100.0 | 64.1 |
| 중 국 | 181 | 45.1 | 275 | 47.2 | 841 | 52.2 | 1,431 | 58.6 | 2,551 | 63.6 | 78.3 |
| 베 트 남 | 7 | 1.7 | 28 | 4.8 | 147 | 9.1 | 289 | 11.8 | 610 | 15.2 | 111.1 |
| 일 본 | 97 | 24.2 | 121 | 20.8 | 145 | 9.0 | 168 | 6.9 | 202 | 5.0 | 20.2 |
| 필 리 핀 | 29 | 7.2 | 44 | 7.5 | 112 | 7.0 | 142 | 5.8 | 171 | 4.3 | 20.4 |
| 몽 골 | 10 | 2.5 | 6 | 1.0 | 83 | 5.2 | 116 | 4.7 | 132 | 3.3 | 13.8 |
| 우즈베키스탄 | 3 | 0.7 | 16 | 2.7 | 67 | 4.2 | 75 | 3.1 | 105 | 2.6 | 40.0 |
| 미 국 | 21 | 5.2 | 27 | 4.6 | 74 | 4.6 | 62 | 2.5 | 73 | 1.8 | 17.7 |
| 기 타 | 53 | 13.2 | 66 | 11.3 | 142 | 8.8 | 161 | 6.6 | 166 | 4.1 | 3.1 |

※ 자료 : 통계청, 「2006년 이혼통계 결과」, 200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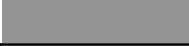
• • 외국인 처의 국적별 이혼 구성비 추이 • •



※ 자료 : 통계청, 「2006년 이혼통계 결과」, 2007. 4

II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유형 및 사례



1.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

- 이주여성의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피해신고 및 보호를 위해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가 여성가족부에 의해 2006년 11월에 설치되었음²⁾.
- 2006년 11월 10일부터 2007년 7월 30일까지 센터의 총 상담건수는 7,844건(월 평균 871건)임.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 여성이 2,743건으로 총 상담건수의 41.8%를 차지해 가장 많았음. 이어 중국(25%), 몽골(11.8%), 러시아(8.7%), 필리핀(3.8%), 한국(3.7%), 태국(2.9%) 순으로 나타남.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의 국적별 통계 (2006.11.10 ~ 2007.7.31) ● ●

(단위 : 건,%)

| 구분 | 계 | 러시아 | 몽골 | 베트남 | 중국 | 필리핀 | 태국 | 한국 | 기타 |
|-------|-------|-----|------|-------|-------|-----|-----|-----|-----|
| 계(건) | 7,844 | 684 | 924 | 3,313 | 1,964 | 299 | 229 | 293 | 138 |
| 비율(%) | 99.9 | 8.7 | 11.8 | 42.2 | 25.0 | 3.8 | 2.9 | 3.7 | 1.8 |

※ 자료 :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통계, 안명옥의원 재정리

- 상담내용을 보면 부부·가족갈등이 2,640건(20.0%)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 특히 부부·가족갈등의 문제는 가정폭력(1,134건, 8.6%)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고 있음. 또한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으로 통역 상담(2,253건, 17.09%)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혼 등 법률상담(2,014건, 15.27%) 비율도 큼.

2) 이주여성 14명이 상담원으로 활동 중이며, 6개 국어(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를 통한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주여성들은 자국 출신 상담원들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내용(중복체크) 통계 • •

(단위 : 건, %)

| 구분 | 계 | 가정폭력 | 부부·가족 갈등 | 성폭력 | 성매매 | 노동 | 체류 | 법률 (이혼) | 통역 | 기타(정보 제공 등) |
|-------|--------|-------|-------------|-----|------|------|-------|------------|-------|----------------|
| 계(건) | 13,186 | 1,134 | 2,640 | 98 | 5 | 269 | 1,192 | 2,014 | 2,253 | 3,581 |
| 비율(%) | 100 | 8.6 | 20.0 | 0.7 | 0.04 | 2.04 | 9.04 | 15.27 | 17.09 | 27.16 |

※ 자료 :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통계, 안명옥의원 재정리

※ 기간 : 2006.11.10 ~ 2007.7.31

□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는 전화와 내방 및 방문 등의 최초 상담 후 여러 방법에 의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 2007년 1월부터 7개월 간의 상담 후 조치결과를 보면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상담이 3,903건(55.1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의료, 법률, 수사, 노동 기관으로의 인계가 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긴급피난 처 피신이나 현장출동 협조요청도 5건씩 있었음. 1366센터의 인지도가 높지 않음을 고려할 때 실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훨씬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음.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결과 통계 (2007.1.1 ~ 2007.7.31) • •

| | 계 | 관련기관 연계 | | | | | | | | | 현장출동요청 | 긴급피난처 피신 | 직접상담 | 2차 상담권고 | 기타 | |
|----|-------|---------|-------|---------|-------|-------|-------|-------|------|------|--------|----------|-------|---------|-------|-----|
| | | 계 | 보호 시설 | 전문 상담기관 | 의료 기관 | 법률 기관 | 수사 기관 | 노동 기관 | 기타 | | | | | | | |
| 총계 | 7,080 | 계 | 1,317 | 65 | 852 | 35 | 41 | 24 | 105 | 195 | 5 | 5 | 3,903 | 968 | 882 | |
| | | 전문기관 연계 | 정보 안내 | 1,114 | 38 | 714 | 31 | 38 | 22 | 98 | | | | | | 173 |
| | | 내담자 연계 | 203 | 27 | 138 | 4 | 3 | 2 | 7 | 22 | | | | | | |
| 비율 | 100% | | 18.59 | 0.92 | 12.03 | 0.49 | 0.58 | 0.34 | 1.48 | 2.75 | 0.07 | 0.07 | 55.13 | 13.67 | 12.46 | |

※ 자료 :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통계, 안명옥의원 재정리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국적별 상담통계도 중국과 베트남 여성의 상담이 많고, 앞서 살펴본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의 통계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 • 국적별 상담통계(2005-2006) • •

(단위 : 건, %)

| 국적별 | 2005 | 2006 | 비고 |
|------|---------------|---------------|--|
| 계 | 568 (100%) | 736 (100%) | 2005년 중복상담 208명 포함 (상담한 실제 인원 360명) 2006년 중복상담 80건 (상담한 실제 인원 641명) |
| 중국 | 294 (51.8%) | 349 (48%) | |
| 베트남 | 46 (8.1%) | 77 (10.7%) | |
| 필리핀 | 43 (7.6%) | 35 (4.9%) | |
| 러시아권 | 39 (6.9%) | 51 (7.1%) | 2006년 : 우즈베키스탄(38), 키르기스스탄(6), 카자흐스탄(7) |
| 러시아 | 32 (5.6%) | 37 (5.1%) | |
| 태국 | 24 (4.2%) | 17 (2.4%) | |
| 몽골 | 24 (4.2%) | 37 (5.1%) | |
| 캄보디아 | 13 (2.3%) | 4 (0.6%) | |

20 행복한 다문화가정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 국적별 | 2005 | 2006 | 비고 |
|-------|-----------|-----------|--|
| 인도네시아 | 12 (2.1%) | 3 (0.4%) | |
| 네팔 | 5 (0.9%) | 2 (0.3%) | |
| 방글라데시 | 4 (0.7%) | | |
| 일본 | 3 (0.5%) | 3 (0.4%) | |
| 북미 | 2 (0.4%) | | |
| 말레이시아 | 1 (0.2%) | | |
| 한국 | 15 (2.6%) | 48 (6.6%) | 2006년 한국의 통계는 남편들이 부인 문제로 상담해 오는 경우임. |
| 미확인 | 11 (1.9%) | 53 (7.4%) | |
| 기타 | | 5 (0.7%) | 기타 : 나이지리아(1), 루마니아(1), 대만(1), 인도(1), 캐나다(1) |

※ 자료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유형별 통계(2005-2006), 안명옥의원 재정리

(단위 : 건, %)

| 년도 | 전 화 상 담 | | | | | | 면접 | 계 |
|------|---------|------|-----------|--------------|--------------|-----------|-----|-----|
| | 성폭력 | 가정폭력 | 이혼 양육권 포함 | 체류 비자연장 국적취득 | 취업, 의료, 쉼터제공 | 가족, 부부 갈등 | | |
| 2005 | 12 | 90 | 191 | 237 | 64 | 70 | | 664 |
| 2006 | 12 | 252 | 181 | 199 | 106 | 186 | 193 | 736 |

※ 자료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통계, 안명옥의원 재정리

□ 통계뿐 아니라 각 단체로 걸쳐오는 전화 및 피해자들의 방문 사례는 심각한 그들의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음.

< 사례1 > 고00 (40대 초반, 재중동포, 남편 61세, 결혼5개월)

(인천여성의 전화 피해 사례, 2007년 8월 25일 현장 인터뷰)

고00씨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인 배우자를 소개받았고, 남편이 집도 소유하고, 전도사로 일하고 있다는 말에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기대했음. 한국에서의 풍요로운 삶 보다는 남편과 함께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그리며 결혼을 결심함. 그러나 한국에 와서 1주일도 안 돼 알게 된 남편의 과거 이력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음.

폭력전과 18범으로 30년간 교도소와 감호소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스스로가 자신을 '건달대장, 사나운 호랑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이전 폭력 범죄 경력을 반성하지 않고 자랑삼아 얘기하는 사람이었음. 생활수급권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여기저기서 술을 마셔댔고,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이틀 밤을 꼬박 세우는 등 체력이 바닥날 때까지 계속 마심.

그러는 동안 남편은 배우자에 대해 도망갈꺼냐, 한국에 몇 번 와봤냐는 식으로 그녀를 끊임없이 의심함. 결국 결혼 한 달 만에 남편은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고, 큰소리치며 화내고 따귀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면서 쫓아냈음. 결혼 3개월째 주먹과 발로 온몸에 폭행을 당해 늑골 4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천안의 이주여성쉼터에 입소하였음.

폭력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고, 결혼 4개월째에는 주먹과 발로 3일에 걸친 중단 없는 극심한 폭력을 당했음. 온몸에 피멍이 든 상태에서 마시던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고 출혈이 멈추지 않아 분당에 있는 차병원 응급실로 실려 감. 보호시설 입소당시 경추2개·늑골4개가 골절되었고, 안구뼈·코뼈 골절·신장출혈 등 8주의 상해진단을 받은 중환자였음.

한 달 반 이상을 병원에서 지낸 후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 장애로 신경정신과 치료와 후유증 치료를 병행하고 있음. 그러나 아픈 몸을 이끌고도 밤을 세워가며 공장에서 일하고 있음. 이는 2개월 뒤에는 쉼터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임. 현재 남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중에 있고, 피해자는 남편과 이혼소송 중에 있음.

※ 인터뷰 내용 부록 상세 참조

□ 또 한 가지 사례는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후인마이 살인사건'임.

그녀를 살해한 사람은 남편이었고, 무참한 폭력으로 인해 한국에서 행복한 결혼을 꿈꾸던 어린 신부의 목숨이 사라지게 됨.

< 사례2 > “후인마이(20세)의 억울한 죽음”

얼마 전 천안시에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민 여성인 후인마이(20세)씨가 사망한 채 발견됨. 발견 당시 녹골 18개가 골절된 상태로 처참했고, 시신은 이미 부패한 상태였음.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유력한 용의자인 남편은 이미 잠적한 상태여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결국 그녀를 살인한 사람이 남편으로 밝혀지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남편과 열심히 살고자 했던 평범한 이주여성의 꿈은 이뤄질 수 없게 되었음. 사건 혐의자인 그녀의 남편은 결혼 전부터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로서 충주에 있는 00국제결혼업체를 통해 25살 차이가 나는 후인마이씨와 결혼했고, 천안으로 이사 옴.

한국으로 시집온 지 6개월 만에 남편에게 살해된 베트남 여성 후인마이(20세). 그녀가 죽기 전 쓴 편지가 공개됐는데 “남편과 이야기 하고 싶다. 남편에게 잘해주고 싶다.”였으며, 한국말을 하지 못해 겪었던 답답함과 “나는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 따뜻한 가족도 원한다. 당신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 나도 다른 여자들 처럼 남편에게 잘 해주고 싶다. 그런데 당신은 왜 나에게 무관심해”라는 내용이였다. 이 편지가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이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음.

남편과의 불화로 결혼 2개월 만에 베트남행을 택하기로 한 그녀는 사건 당일 남편에게 베트남으로 보내 달라 했고, 이에 화가 난 남편의 폭행으로 끝내 생을 마감했음.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음. 그녀를 한국에 소개한 결혼중개업체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한국사정을 물어볼 곳이 그녀에게는 없었음.

(자료 : 2007년 8월 7일, 오마이뉴스)

2. 결혼중개업체로 인한 피해

- 현재 결혼중개업은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들의 비윤리적·반인권적 불법·탈법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임. 국제결혼이 '상업화'되면서 고수익 창출을 꾀하는 결혼중개업체들의 횡포가 심해짐.

- 한국소비자원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2002년 27건에서 2006년 75건으로 약 3배정도 증가했고 피해구제 건수도 2건에서 11건으로 늘어나면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 • 결혼중개업체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 •

(단위 : 건)

| 구분 \ 연도 |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7월 | 계 |
|--------------------|-----------|------------------------|-------|-------|-------|-------|---------|-------|
| | | 국내·국제 결혼중개업 체 관련 | 1,301 | 1,786 | 1,484 | 1,582 | 1,723 | 778 |
| | 피해 구제 | 186 | 215 | 224 | 232 | 251 | 140 | 1,248 |
|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련 | 소비자 상담 | 27 | 30 | 51 | 65 | 75 | 58 | 306 |
| | 피해 구제 | 2 | 2 | 6 | 7 | 11 | 10 | 38 |

※ 국제결혼중개업은 별도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결혼상담소 품목 중 내용상 국제결혼이 포함된 건을 통계치로 작성한 것임.

□ 소비자원의 국제결혼 피해유형을 보면, 피해구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도망가는 등의 위장결혼 및 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고, 추가비용과 지참금 그리고 부정확한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도 나타나고 있음.

● ● 국제결혼 관련 피해유형 (2005.1.1~2007.7.31) ● ●

(단위 : 건)

| 구분 | 빈도 | | |
|----------------------------|------|------|--------|
| | 2005 | 2006 | 2007.7 |
| 계약해지 및 위약금(해약금)문제 | 4 | 2 | - |
| 상대방 배우자가 도망가는 등의 위장결혼 및 사기 | 1 | 2 | 4 |
| 당초 계약금보다 추가비용 및 지참금 요구 | - | 3 | 3 |
| 상대방 정보의 불충분·부정확·과대정보 | - | 2 | 1 |
| 상대방의 병·신체적 결함·이혼 전력 등의 은폐 | - | 1 | - |
| 기타 | 2 | 1 | 2 |
| 계 | 7 | 11 | 10 |

□ 경찰청이 제시한 위장결혼사범 단속실적을 보면, 지난 3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04년(698건/2,048명 검거), '05년(1,468건/3,650명 검거), '06년(1,653건/4,040명 검거), '07년 7월 현재(1,682건/4,441명 검거)이 발생하였음. 특히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는 '04년 155명에서 '06년 397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하였음.

● ● 위장결혼사범 단속실적 ● ●

(단위 : 건, 명)

| 구분 | | 2004년 | 2005년 | 2006년 | '07.7월 |
|------|-------|-------|-------|-------|--------|
| 단속현황 | 건 수 | 698 | 1,468 | 1,653 | 1,682 |
| | 인 원 | 2,048 | 3,650 | 4,040 | 4,441 |
| | 알선브로커 | 155 | 307 | 397 | 318 |

※ 자료 : 경찰청, 「위장결혼사범 단속실적」, 2007. 8, 안명옥의원 재정리

- 경찰청이 제공한 이번 자료를 보면 위장결혼자는 총 13,002명('04~'07.7)으로 남성 7,452명/ 여성 5,550명으로 이 중 한국인 8,630명(66.37%)과 중국인 4,250명(32.69%)이 12,880명으로 99%이상 차지함.
- 연령별로도 40대가 5,998명(46.13%)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3,826명(29.43%), 30대 2,168명(16.67%) 순으로 나타났고, 무엇보다 60대 이상의 위장결혼자가 627명(4.82%)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음.

• • 위장결혼사범 단속실적 • •

(단위 : 건, 명)

| 구 분 | | 2004년 | 2005년 | 2006년 | '07.7월 | |
|------------|--------------|-------|-------|-------|--------|-------|
| 검거인원 분석 | 알선브로커 | 155 | 307 | 397 | 318 | |
| | 위장결혼자 성별 | 소계 | 1,893 | 3,343 | 3,675 | 4,123 |
| | | 남 | 1,093 | 1,912 | 2,070 | 2,377 |
| | | 여 | 800 | 1,431 | 1,573 | 1,746 |
| | 위장결혼자 국적별 | 소계 | 1,893 | 3,343 | 3,675 | 4,123 |
| | | 한국 | 1,275 | 2,204 | 2,382 | 2,769 |
| | | 중국 | 613 | 1,107 | 1,229 | 1,301 |
| | | 베트남 | 0 | 1 | 0 | 15 |
| | | 필리핀 | 0 | 1 | 0 | 2 |
| | | 미국 | 0 | 0 | 0 | 0 |
| | | 기타 | 5 | 30 | 32 | 36 |
| | 위장결혼자 연령별 | 소계 | 1,893 | 3,343 | 3,643 | 4,123 |
| | | 10대 | 1 | 0 | 0 | 3 |
| | | 20대 | 47 | 93 | 99 | 140 |
| | | 30대 | 304 | 575 | 594 | 695 |
| 40대 | | 909 | 1,655 | 1,629 | 1,805 | |
| 50대 | | 532 | 883 | 1,141 | 1,270 | |
| 60대 이상 | | 100 | 137 | 180 | 210 | |

※ 자료 :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위장결혼사범 단속실적」, 경찰청, 2007. 8

-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위장결혼사범과 알선브로커들로 인해 국적을 불문하고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위장결혼 및 알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함.
- 결혼이주민여성과 입국·체류목적으로 한국인과 결혼한 여성에 대한 법무부의 여성수용자 현황을 보면, 결혼이주민여성 11명과 입국·체류연장을 목적으로 결혼한 여성이 925명으로 총 936명이 수용되었음.

• • 결혼이주민여성/입국·체류목적 결혼 수용자 현황('05~'07.7) • •

(단위 : 명)

| | 2005 | 2006 | 2007.7 | 총계 |
|------------|------|------|--------|-----|
| 결혼이주민 여성 | 5 | 4 | 2 | 11 |
| 입국·체류목적 결혼 | 674 | 229 | 22 | 925 |

※ 자료 : 법무부, 「결혼이주민여성/입국·체류목적 결혼 수용자 현황('05~'07.7)」, 2007.8, 안명옥의원 재 정리

- 수용된 결혼이주민여성을 죄목별로 보면 살인 및 살인미수가 총 4건이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살해 대상이 모두 자신의 남편이었음. 그리고 입국·체류목적 결혼 여성의 경우는 대부분이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및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³⁾였음.

3)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는 것(형법 228조)을 말하며,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하는 것(형법 227조의 2)을 말함.

● ● 결혼이주여성 죄목별 분류 현황('05~'07.7) ● ●

(단위: 명)

| 구분 연도 | 총 계 | 폭력 | 사문서 위조 (행사) | 살인 | 살인 미수 | 관세법 위반 | 공무 집행 방해 | 현존 건조물 방화 | 간통 |
|----------|-----|----|-------------------|----|----------|-----------|----------------|-----------------|----|
| 총 계 | 11 | 1 | 2 | 3 | 1 | 1 | 1 | 1 | 1 |
| 2005 | 5 | 1 | 1 | 1 | 1 | | | 1 | |
| 2006 | 4 | | 1 | | | 1 | 1 | | 1 |
| 2007 | 2 | | | 2 | | | | | |

※ 자료 : 법무부, 「결혼이주여성 죄목별 분류 현황('05~'07.7)」, 2007. 9, 안명옥의원 재정리

● ● 입국·체류목적 결혼자 죄목별 현황('05~'07.7) ● ●

(단위 : 명)

| 구분 연도 | 총 계 |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
|----------|-----|----------------|-----------------|
| 총 계 | 925 | 296 | 607 |
| 2005 | 674 | 267 | 407 |
| 2006 | 229 | 29 | 200 |
| 2007 | 22 | 4 | 18 |

※ 자료 : 법무부, 「입국·체류목적 결혼자 죄목별 분류 현황('05~'07.7)」, 2007. 9, 안명옥의원 재정리

□ 수용된 여성들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30~40세 이상으로 적지 않은 나이임. 이러한 불법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국제결혼은 국제결혼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들을 강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음.

• • 결혼이주여성/입국·체류목적결혼 수용자 연령별 현황('05~'07.7) • •

| 구분 \ 연령 |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
| | | 결혼이주여성 | 2005 | | | 2 | 3 | |
| | 2006 | | | | 3 | 1 | | |
| | 2007.7 | | | 1 | 1 | | | |
| | 총계 | | | 3 | 7 | 1 | | |
| 입국·체류목적결혼자 | 2005 | | 31 | 184 | 332 | 119 | 7 | 1 |
| | 2006 | | 18 | 66 | 98 | 44 | 3 | |
| | 2007.7 | | 1 | 9 | 10 | 2 | | |
| | 총계 | | 50 | 259 | 440 | 165 | 10 | 1 |

※ 자료 : 법무부, 「입국·체류목적 결혼자 연령별 분류 현황('05~'07.7)」, 2007. 9, 안명옥의원 재정리

□ 국제결혼으로 인한 각종 피해들이 국제결혼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체의 지나친 영리추구 및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견해가 많음. 이에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사례1 :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상업성 >

○ 소비자는 2006. 8. 12에 △△국제결혼알선업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결혼을 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을 지불함. 2006.9.3 우즈베키스탄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식을 올렸고, 당시 성혼사례비 3,0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현지 결혼식 비용으로 6,800,000원, 신부의 치아 치료비 1,100,000원, 기타 제반비용으로 500,000원이 소요됨. 이후 신부가 입국하기로 하여 2006.9.15일자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신부가 입국하지 않음. 이에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했으나 신부를 찾을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대금의 일부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함.

○ 소비자는 2006.11.13 ☆☆국제결혼알선업체와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기로 계약하고, 대금 5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11.14 맞선비용으로 2,5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함. 2006.11.14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11.18 약혼 후 예식촬영을 마치고, 신부는 추후 입국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11.21

귀국함. 이후 소비자는 성혼비 7,000,000원을 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신부측 서류가 도착하면 3,0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기로 함. 그러나 신부측에서 지참금을 추가로 2,000,000원을 요구한다며 서류 발급을 거절하여 소비자가 직접 신부측에 송금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업자가 거절하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 사례2 > 티 (19세, 베트남, 남편44세로 지체장애)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하였고, 티의 남편은 결혼비용 1200만원 이외에도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오토바이 500불, 신부위로금 600불, 장애인위로금 600불의 경비가 더 들었다고 말함.

내담자는 집안에서 속옷이나 민소매차림의 가벼운 복장으로 생활하였는데, 시모(81세, 가벼운 치매증상)는 내담자의 옷차림이 불안하고 못마땅해 잔소리를 하게 됨. 내담자는 시모의 표현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에게 화를 낸다고 생각하여 더욱 위축되고 방어하게 되었음.

시모는 베트남으로 돌아가라며 경비실 앞에 짐을 끌어다 놓고 쫓아냈음. 경비실에서 경찰에 연락해서 본회로 연결하였고, 본회에서 가족들과의 상담과 내담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집으로 귀가하였음. 그러나 티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 하고, 자해를 하거나 멍하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기만 한 것을 큰아주머니가 발견하고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베트남으로 돌려보냈음.

티와 통역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결혼중개업체가 한국어교육과 요리 교육 등을 시키겠다고 돈을 받아 갔지만 전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친정에 지불하라고 준 돈도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임. 또한 심신이 미약한 티를 건강한 여성이라 속이고 소개한 것과 더불어 가족들은 검찰청에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음.

3. 차별 및 성적 학대로 인한 피해

- 국제결혼 가족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 특히 부모, 형제, 자매 등과 동거하는 가족이 많음.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만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음. 특히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데 있어서는 한국의 문화를 익히고 이에 적응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이민자들이 생각하는 가족 중 가장 힘든 관계는 배우자의 어머니(8.2%), 배우자(4.1%), 배우자의 형제·자매(3.7%), 배우자의 기타 가족(1.4%), 배우자의 아버지(0.5%), 자녀(0.8%) 순으로 나타났고, '배우자 어머니'에 대해 결혼이민자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힘들어 함.⁴⁾ 조사결과에서처럼 한국여성들이 결혼 후 겪게 되는 고부갈등 문제를 결혼이민자들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으므로 행복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게 됨.

• • 가족 중 가장 힘든 관계 • •

(단위 : %, 명)

| 이민자 조사 | | 배우자 어머니 | 배우자 | 배우자 형제자매 | 배우자 기타가족 | 배우자 아버지 | 나의 자녀 | 기타 | 없다 | |
|--------|------|---------|-----|----------|----------|---------|-------|-----|------|------|
| 전체 | 1177 | 8.2 | 4.1 | 3.7 | 1.4 | 0.8 | 0.8 | 8.9 | 72.2 | |
| 성별 | 여성 | 1063 | 9.1 | 4.0 | 3.8 | 1.4 | 0.8 | 0.8 | 8.1 | 72.0 |
| | 남성 | 114 | 0.0 | 4.4 | 2.6 | 0.9 | 0.9 | 0.0 | 16.7 | 74.6 |

※ 자료: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2006

4)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2006)

- ‘인천 여성의 전화’의 첫 번째 상담 사례는 시어머니의 폭언과 멸시, 가족들을 말리기는커녕 아내를 쫓아 낸 남편과 아주버님이란 사람의 추행, 그리고 임신에 이르기까지 충격 그 자체라 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하고 결국엔 폭행과 감금까지 당한 뒤 도망친 경우로 충격적 사례들임.
- 결혼이주민 여성이란 신분을 떠나서 한 명의 인격체에게 ‘어쩔 저럴 수 있을 까’하는 의구심을 들게 함. 그리고 이러한 피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심각해 짐으로써 결혼이주민 여성에 대한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볼 수 있음.

< 사례1 > 자00 (26세, 몽골, 결혼 1년6개월, 대졸) /남편 (37세, 고졸)

내담자는 시부모와 시아주버님의 가족들 그리고 남편과 생활하였고, 남편의 소득은 물론 집안의 모든 일을 시부모가 관리하였음. 결혼 생활 동안 내담자는 생활비 한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고, 임신 중에 먹고 싶은 음식도 사먹을 돈이 없었음. 가끔 남편이 시부모 몰래 1~2만원의 교통비 정도의 용돈과 먹을거리를 사주었으며, ‘절대로 부모님이 알면 안돼’라고 말하였음.

시어머니는 평소에 내담자의 바깥출입을 규제하여, 친구 집에도 가지 말라고 했고, 출산한 친구의 병원을 방문했을 때 내담자의 친구에게 ‘빨리 보내라’고 다그쳐 약간의 언쟁을 했고 그 사이에서 욕도 오가고 했음.

내담자는 2006년 12월경 반복되는 스트레스로 태아의 사산 수술을 받아야만 했었고, 내담자의 배가 아프다는 호소를 남편과 시어머니는 가볍게 듣고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음. 피가 흐르고 고통이 심해지자 그때서야 병원에 가게 되었지만 이미 태중의 아이는 죽어갔고 분만유도는 산모에게도 위험하다는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음. 병원에서는 2~3년 내에 임신하면 위험하다고 주의를 줬지만 시어머니는 자꾸 아이를 가질 것을 독촉했음.

또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아주버님은 내담자에게 자주 스킨십을 하려 했고, 내담자 혼자 있는 방에 몰래 들어와 마사지를 해달라는 등 추행을 하

며, 내담자가 소리 지르겠다고 하면 도망치듯 나가버렸음. 아주버님의 이런 추행을 남편에게 이야기 했지만 남편은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음.

2007년 봄, 내담자의 생일을 맞아 낮에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에 남편을 만나 외식을 한 후 12시쯤 귀가하였으나 시어머니는 '한국에서는 생일을 챙기고 친구들 만나는 일은 없다'며 야단을 칩. 시어머니는 내담자에게 '몽골은 가난하고 못사니까 여기에 왔지'하며 무시했고, 친정 부모님들한테도 결혼식 때 '아들 양말 하나 안 사주는 못 사는 집'이라며 함부로 말했음.

내담자는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건 그래도 참고 또 참아왔지만 70대 친정 노부모님까지 함부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참기가 어려웠고, 생일날 외식한 문제로 시어머니는 '몽골로 돌아가라, 너 마음대로 살아라'하며 화를 냈음.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나가라'고 말해 내담자는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함. 남편의 가지 말라는 말 한마디를 기다렸지만 남편은 언제나 그렇듯 자신의 엄마 뜻에 따랐고, 남편의 연락만을 기다리며 생활한지 벌써 4개월이 흘렀음.

현재는 의정부의 한 식당에서 숙식하며 일하고 있고, 남편이 보고 싶어 전화연락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떠나가라, 좋은 사람 만나 시집가라, 도망갔다고 신고했다'뿐이었음. 내담자는 너무나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고 있고, 시댁식구들과 떨어져 남편과 몽골에 가서 살고 싶다고 했음.

물론 내담자의 이런 제안에 남편은 부정적이었고, 내담자는 이전처럼 시댁식구들과 함께라면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며, 몽골에서는 결혼경력과 유산의 경험이 있는 자신이 살아가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 돈도 없고 몸도 약한 상태로 귀국하고 싶진 않다고 함.

< 사례2 > 수난타 (42세, 태국, 한국인 남성과 2번 결혼)

태국의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첫 번째 결혼을 하였고, 수난타의 임신에 남편은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하였음. 이 후 남편과의 실갱이 끝에 출산을 한 후 남편에게 강제로 이혼 당했고 아이는 입양시킴.

이혼 한 달 만에 00교의 적극적인 소개로 재혼하게 됐고, 재혼남은 전처와 사별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남편의 경제적 통제 때문에 이혼했다고 함. 결혼 전에 전처자식은 시가에서 양육하는 것으로 약속했지만 결국엔 사춘기의 딸과 함께 살게 되었음.

사는 동안 남편과 딸아이는 수난타에게 무관심했고, 자기들끼리만 잘 지냈으며, 수난타가 한 밥은 먹지도 않았음. 그리고 남편은 자신의 몸에 손도 못 대게 하는 등 수난타는 가족 내에서 점점 외톨이가 되었음. 결혼생활 내내 남편으로부터 생활비 한 푼 받지 못했고 단돈 2만원을 받았다고 함.

극도의 스트레스로 유산이 되자 몸도 마음도 피폐해진 상태에서 남편과의 갈등은 깊어갔음. 이 후 남편은 내담자의 옷가지 등 물건을 던져 위협하고 따귀를 때리는 등 난폭한 행동 끝에 밖에서 문을 잠가버리고 수난타를 감금했음. 결국 수난타는 공포에 시달리다 손으로 유리를 깨고 탈출했음.

- 앞서서처럼 고부갈등과 남편의 가족들로 인한 갈등뿐 아니라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성격이나 생활습관·경제적 문제·자녀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소한 싸움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극한 행태인 폭력으로 나타나기 일쑤여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임.
- 특히 이주여성 관련 상담소나 단체에 상담을 해 오는 많은 이주여성들이 부부 간 관계에 있어 성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함. 심한 경우에는 신체적 폭력으로도 나타나고, 이 중에서는 남편의 성관계 요구가 강압적인 것을 넘어서 '성도착증'의 병적인 것으로 보여 지는 경우도 있다고 함.

- 그리고 이러한 성적학대 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뺏거나 출입국 관리소에 위장결혼으로 신고해 한국에서 영영 체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함. 그로 인해 결혼이주민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요구를 들어 주게 됨.

< 사례 1 > 왕00 (33세, 중국한족, 남편 41세, 결혼1개월)

이미 한국 남성과 결혼해 잘살고 있는 내담자의 친구를 통해 내담자를 알게 된 시누이가 적극적으로 결혼을 주선하고 중국 현지를 방문하여 ‘한국에 집도 있고, 직장(현대)도 탄탄하며, 한국으로 시집오면 아파트와 새 차도 사 주고, 대학도 보내주겠다’ 는 등의 거짓과 허황된 약속으로 친정식구들을 설득하여 결혼을 하게 됨.

결혼 후 남편은 부부 성관계에 집착을 보였고, 남편과의 실갱이 끝에 답답해진 내담자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한 사이 시누이와 남편은 내담자의 휴대폰을 통화 정지시키고, 내담자의 짐을 뒤져 결혼패물과 지갑 등을 가져갔음.

그리고 통역자를 통해 시누와 시누이의 남편은 ‘부부 성관계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해야 하며, 남편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줄 경우 한국어교육(무료)을 받게 해 주겠다’ 고 했음. 또한 ‘대학교는 꿈도 꾸지마라,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살림하는데 필요 없으니 보관하겠다, 결혼패물에 대해서는 아무 권리 없다, 친구와 연락을 끊어라, 앞으로 휴대폰은 압수 하겠다’ 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협박했음.

이에 동의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결혼을 지속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혼인빙자로 감방에 집어넣겠다는 협박으로 7~8시간에 걸쳐 집요하게 위협했음. 결국 내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손발이 굳어져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을 할 수도 없었으며, 숨을 못 쉬고 혈떡거리는 쇼크 상태가 되어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었음.

4. 경제적 불안과 체류문제로 인한 피해

-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 이주여성 가운데는 자국에서의 빈곤과 실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국행 결혼을 택한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이주여성들에게 있어 한국 남성들의 사회·경제적 불안상태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불화요인이 되기도 함.
- 남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 전 친정에 생활비를 보태주기로 했어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주 여성들 중 남편의 수입이 적기 때문에 자신도 직장에 다님으로써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함.
- 특히 사회주의 국가 여성들이 그렇듯 베트남 여성 대부분이 직장 생활을 한 경험이 있으며, 농촌 출신이더라도 농사일을 하는 등 집안에서 경제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경제활동 자체를 당연하다고 생각함.⁵⁾
- 한국 남성들은 이주여성들의 취업을 허락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그들을 통제하려 함. 이러한 과정에서 기본적인 생활비와 용돈도 제공받지 못한 채 이주여성들은 물리적 고통과 심한 정신적 모멸감을 느끼게 됨.

5) 김성미경, 「국제결혼 여성이주자의 삶과 문제」 (2006.6)

< 사례1 > 송00 (41세, 재중동포, 결혼2년8개월, 고졸)/남편(47세, 초졸)

내담자는 남편과 이발소 경영을 하며 열심히 살려 노력했지만 남편은 도박에 빠져 한 달에 반 이상을 외박을 함. 몇 개월 전까지는 가정의 수입에 대해 내담자가 관리하였음. 그러나 남편은 돈을 모을 틈도 없이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있음. 계속되는 도박 빚으로 남편은 내담자에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잦은 싸움이 일어나곤 했음.

점점 남편이 화를 내고 폭언하는 정도가 심해졌고, 술을 마신 뒤 생활용품들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동들을 함. 내담자는 집으로 들어오는 남편의 발자국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고 함. 남편은 내담자에게 '한국에 온 것만으로도 행운이다' 라며 매번 무시함.

내담자에게는 16살 된 아들이 있는데 현재 중국에 거주 중이며, 아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야만 하는 실정임. 내담자는 남편과 이발소를 열심히 경영하고 도박으로 탕진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이 이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함.

몇 개월 전 내담자는 따로 경제적 활동을 하려고 일자리를 찾았는데 남편은 자신 혼자 이발소를 운영하려면 일당아줌마를 따로 고용해야하고, 생돈이 나가니 이발소가 팔릴 때까지 만이라도 함께 일할 것을 부탁하였음.

내담자는 수입의 전부를 관리하다보면 도박에 빠진 남편의 끊임없는 돈 요구로 또 다시 싸우게 될 것 같아 일당 5만원씩을 받기로 함. 이렇게 되다보니 남편에게 자신은 일당아줌마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 들지만 싸우지 않으니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하며 생활하고 있음.

남편의 도박·외박·심한욕설·생활용품을 던져 위협하는 등 부부로서 서로를 배려하고 책임지는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불안하고 힘들다고 함. 그리고 내담자는 이렇게까지 해서 남편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했으며,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혼자서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음.

- 앞의 사례에서처럼 이주여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라도 경제활동을 통해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기를 바램. 하지만 낯선 땅에서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고,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서 음식점이나 부품 조립 공장 등 단순노무직인 경우이며, 그나마 어학원강사 및 무역 사무원 등 자국의 언어를 이용할 수 있는 직업을 얻은 경우는 성공한 사례라 할 수 있음.

- 노동부에서 제출한 결혼이주민 여성의 연도별 취업현황을 보면 '05년 구직등록자수는 179명에서 '07년 7월 말에는 817명으로 4.5배 이상 증가했고, 알선건수도 276건('05)에서 1,979건('07.7)으로 7배 이상 늘어났음. 그러나 취업자 수는 35명('05)에서 122명('07.7)으로 3배 정도 증가해 구직을 원하는 결혼이주민 여성들의 취업이 실제로도 쉽지 않음을 보여줌.

- '05년 179명의 구직등록자 중 35명이 취업함으로써 19.55%의 취업률을 보였고, '06년(18.19%), '07.7월(14.93%) 갈수록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음. 이는 일하고자 하는 여성은 많으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 보여짐. 그러므로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민 여성에게 취업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 ● 결혼이주민 여성의 연도별 취업현황 ('05~'07.7) ● ●

(단위 : 명, 건)

| 연도 | 구직등록자수 | 알선건수 | 취업자수 | 취업률 |
|----------|--------|-------|------|--------|
| 2005년 | 179 | 276 | 35 | 19.55% |
| 2006년 | 654 | 1,348 | 119 | 18.19% |
| 2007년 7월 | 817 | 1,979 | 122 | 14.93% |
| 합 계 | 1,650 | 3,603 | 276 | - |

※ 자료 : 노동부, 「결혼이민자 여성의 취업현황」, 안명옥의원 재정리

• • 결혼이주민 여성의 연령별 취업현황 ('05~'07.7) • •

| 연령대 | 구직등록자수 | 알선건수 | 취업자수 |
|-----------|--------------|--------------|------------|
| 10대 | 13 | 40 | 5 |
| 20대 | 518 | 1,430 | 90 |
| 30대 | 618 | 1,439 | 110 |
| 40대 | 409 | 587 | 56 |
| 50대 | 88 | 107 | 15 |
| 60대 | 2 | - | - |
| 70대 | 1 | - | - |
| 80대 | 1 | - | - |
| 합계 | 1,650 | 3,603 | 276 |

* 출처 :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노동부 「결혼이민자 여성의 취업현황」

- 앞에서 언급했듯이 결혼이주민 여성들의 직종별 취업현황을 보면 생산활동과 관련된 단순노무자·조립·검사원으로 취업한 경우와 주방보조 및 음식점서비스종사자로 일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그나마 무역업이나 어학원강사로 일하는 경우는 자국의 언어를 활용하는 등 취업에 있어 좋은 사례임.
- 결혼이주민 여성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교육을 강화하고, 컴퓨터 활용 및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 영역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 • 결혼이주인 여성의 직종별 취업현황 ('05~'07.7) • •

| 직종명 | 구직등록자수 | 알선건수 | 취업자수 |
|-------------------------|--------|-------|------|
| 상표부착 등 생산관련 단순노무자 | 663 | 1,781 | 131 |
|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 248 | 810 | 44 |
| 자동차 조립 및 검사원 | 21 | 60 | 4 |
| 결혼상담원 | 1 | - | - |
|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원 | 4 | 4 | 1 |
| 무역사무원(일어) | 20 | 32 | 1 |
| 경리사무원(제조업) | 1 | 29 | 1 |
| 일본어관광통역안내원 | 7 | 3 | 2 |
| 중국어관광통역안내원 | 17 | 7 | 2 |
| 주방보조원 | 35 | 67 | 5 |
| 육아도우미 | 4 | 13 | 2 |
| 플라스틱사출성형기조작원 | 25 | 79 | 7 |
| 직물재봉원 | 12 | 28 | 2 |
| 총무사무원 | 16 | 24 | 2 |
| 단순경리사무원 | 3 | 30 | - |
| 어학학원강사 | 61 | 44 | 8 |
| 간호조무사 | 1 | 3 | - |
| 보육교사 | 8 | 7 | 1 |
| 주방보조원 | 30 | 41 | 2 |
| 무역사무원(영어) | 7 | 32 | - |
| 무역사무원(중국어) | 42 | 106 | 3 |
| 상점판매원 | 11 | 3 | - |
| 청소원(환경미화원·건물청소원·세차원 포함) | 40 | 52 | 6 |

| 직종명 | 구직등록자수 | 알선건수 | 취업자수 |
|-----------------|--------------|--------------|------------|
| 번역가 | 10 | 10 | 1 |
| 통역가 | 37 | 30 | 4 |
| 컴퓨터자료입력원(워드입력원) | 4 | - | - |
| 음식서비스종사원(홀씨빙원) | 25 | 68 | 4 |
| 총무사무원 | 16 | 9 | 2 |
| 경리사무원 | 15 | 18 | 1 |
| 사무보조원 | 7 | 10 | 1 |
| 가사도우미 | 7 | 1 | 1 |
| 합계 | 1,408 | 3,401 | 238 |

※ 자료 : 노동부, 「결혼이민자 여성의 취업현황」, 안명옥의원 재정리

-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결혼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는 결혼이주민 여성들에게는 2년이라는 거주 기간이 주어지지만 안정적 체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음. 특히 이주민 여성들의 체류 문제를 협박과 폭력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주여성들의 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음.
- 결혼이주민 여성 중 남편에 의해 고의적으로 유기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때에 한국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어도 체류 문제로 인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여 강제 출국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법무부로부터 2002~2007.7월까지 결혼이민자 중 불법체류자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고, 여성의 경우 '07.7월 7,130명으로 집계돼 이미 작년 수치를 넘어섰고 있음. 배우자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여성이 '07.7월 현재 92,371명인 것을 감안할 때 결혼이민자 여성 100명 중 8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남.

• • 결혼이민자 중 불법체류자 현황 ('02~'07.7) • •

(단위 : 명)

| 연도별 | | '02년말 | '03년말 | '04년말 | '05년말 | '06년말 | '07.7월 |
|--------------------|---|-------|-------|-------|-------|-------|--------|
| 합계 | | 2,304 | 3,214 | 3,361 | 4,675 | 6,534 | 7,879 |
| F-2-1 국민 배우자 | 남 | 74 | 96 | 112 | 316 | 597 | 749 |
| | 여 | 2,230 | 3,118 | 3,249 | 4,359 | 5,937 | 7,130 |

※ 자료 : 법무부, 「결혼이민자 중 불법체류자 현황('02~'07.7)」, 2007. 10

- 결혼이민자가 불법체류자화 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의 단일한 정책 수립과 의식부족을 비판하는 동시에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봄.
- 어떠한 이유로든 체류연장이나 국적 취득에 의한 안정된 상태가 보장되지 않는 이상 결혼이주민 여성들의 한국생활은 불안함의 연속일 것임은 분명해 보임. 결국 안정된 체류의 보장이야 말로 결혼이주민 여성들에게 있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있어 진정 필요한 문제라 생각함.

< 사례2 > 레0000 (42세, 필리핀국적, 결혼6년, 전문대졸)

결혼 후 남편의 전처자식 (당시 7살, 10살)을 양육하며 가사일은 물론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생활해왔음. 그동안의 결혼생활 동안 남편으로부터 일정규모의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고, 내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만 했음.

남편은 결혼생활 동안 내담자를 소홀히 대해왔고, 남편 옆에는 항상 많은 여자들이 있었음. 심지어 남편의 전처가 내담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와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고, 내담자는 방에 혼자 있었던 적도 있었음. 남편은 내담자의 존재 자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 같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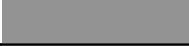
2006년 11월 남편과 아이들은 내담자만을 남겨둔 채 남편명의 집을 매도하고 이사를 갔음. 남편은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더 이상 너는 필요 없다,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 며 떠나갔음.

혼자 남겨진 내담자는 친정어머니의 장례식을 위해 필리핀에 다녀온 이후로 보증금50만원, 월세16만원의 셋집에 살고 있으며 남편은 아무 연락도 없고 행방조차 모르고 지내오고 있다고 함.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오고 있지만 체류기간이 불안정한 내담자로서는 취직하기도 어려운 상태임.

결국 내담자는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어렵게 남편과 연락이 되어 도움을 요청해 보았음. 그러나 매번 남편은 바쁘다고 연락을 회피했고, 이제는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고 함. 내담자는 고국을 떠난 지 너무 오래 되었고, 필리핀에서는 살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기를 희망하지만 외국인 신분이고 결혼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함.



정부의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정책 및 문제점



1. 정부의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정책 추진과정

-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복지 및 생활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음. 또한 부처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남도·전라북도·강원도 등 지자체에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정부의 결혼이민자 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1차 지원대책(2005.8, 사회문화장관 회의)은 체류자격 불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안정적 체류지원, 생활정보 제공, 한국어·한국문화 이해 교육, 가족관계 증진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지원 등이 핵심 내용임.
- 2005년 9월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진 결혼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하고,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2005년 11월 25일 발표된 제2차 지원대책은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응 지원체계 구축과 자녀양육 지원 등 생활안정대책을 중심으로 함.
- 그러나 1·2차 지원대책을 실시하면서 결혼중개업체의 관리 및 이용자 보호와 부처 간 지원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업무담당자의 교육 미흡,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이혼 및 간이귀화 신청과정에서의 국내 제도적·인적·물적 기반의 취약성에 의한 귀책사유 입증의 어려움과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

- 이에 따라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2005년 12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간담회 그리고 베트남·필리핀 현지실태 조사를 거쳐 3차 종합 지원대책(2006.4.26)인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대책」을 마련함.
- 3차 지원대책에서는 체류지원 및 생활안정과 정보제공·취업·보건의료서비스 지원내용을 보강하고,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및 국가적 차원의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 그리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방안도 포함함.
- 여성가족부를 총괄부서로 12개 관련부처(교육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7대 주요 과제 및 26개 세부 과제를 선정함.

• • 부처별 세부역할 분담 • •

| 조치사항 | 주관 부처 | 협력기관 |
|--------------------------------------|-------|----------------|
| 1.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 | |
| ① 결혼중개업체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 | 법무부 | 경찰청 |
| ②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를 위한 입법 추진 | 복지부 | |
| ③ 인신매매 등 중개행위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 | 법무부 | 외교부 여가부 경찰청 |
| ④ 결혼비자 발급 서류·절차 표준화 | 법무부 | 외교부 |
| ⑤ 외교채널을 통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 외교부 | |
| ⑥ 결혼 당사자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제공 | 여가부 | 복지부 외교부 |

| 조치사항 | 주관 부처 | 협력기관 |
|--|-------------------|--------------------------|
| 2.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 | |
| ①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신청 요건 강화 | 법무부 | |
| ② 혼인파탄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 | |
| ③ 이혼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시 입증요건 완화 | | |
| ④ 사실혼 부모 출생자녀 및 외국인 모에게 국적 또는 영주권 부여 | | |
| 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보호 | 여가부 | 법무부 |
| 3.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 | |
| ①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여가부 | 법무부 행자부 정통부 지자체 |
| ②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 지원 | 여가부 | 문화부 교육부 농림부 |
| 4.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 | |
| ① 다문화교육추진체계 구축, 학교의 결혼이민자 자녀지원 기능 강화, 교사역량 강화, 집단 따돌림 예방 | 교육부 | |
| ② 복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 | 복지부 | 교육부 |
| 5.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 | |
| ① 기초생활 보장 및 건강증진 지원 | 복지부 | 여가부 |
| ②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 복지부 | 여가부 농림부 |
| ③ 직업상담 및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진출 지원 | 노동부 | |
| 6.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 | |
| ① 정부정책 안내 및 일반국민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 여가부 법무부 | |
| ② 지역사회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 문화부 | 교육부 행자부 지자체 |
| ③ 공무원 교육 실시 | 인사위 여가부 법무부 | 전부처 지자체 |
| ④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 복지부 행자부 | |

| 조치사항 | 주관 부처 | 협력기관 |
|-------------------------------------|------------|---------|
| | 교육부 농림부 | |
| 7. 추진체계 구축 | | |
| ①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 여가부 | 행자부 교육부 |
| ②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 여가부 | 지자체 |
| ③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 및 통역, 상담, 교육인력 양성 | 여가부 복지부 | |
| ④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중앙, 지방정부간 정책네트워크 구축 | 여가부 | |

※ 자료 : 여성가족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2006. 4.

□ 외국인정책위원회⁶⁾에서는 2006년 5월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정하여, 6대 정책목표 및 대상(외국국적 동포·결혼이민자·외국인여성 과 자녀·외국인근로자)을 설정해 지원정책을 마련함. 이 중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 그리고 외국인 여성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이 주요 과제에 포함됨.

□ 행정자치부는 2006년 8월 국내거주 외국인과 한국 국적 취득 외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통합지원 업무추진 지침」을 마련함.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체계 구축과 거주외국인 지원기반 마련, 외국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적응지원 그리고 다문화를 존중하는 지역사회 조성에 대해 지자체가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2008년부터 정부 합동평가 대상 과제로 선정토록 함.

6)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외국인 정책에 대해 심의함.

2. 정부의 결혼이민자 지원 현황

가. 한국생활적응 및 정착지원

- 결혼이민자들의 대부분이 한국생활 적응에 있어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는 2005년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 2007년 4월엔 중급 교재를 각각 발간하였고, 문화관광부는 외국인 이주민 한국어 보급 운영기관으로 한국어세계화재단을 선정하고 민간단체 및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의 한국어교실을 지원한 바 있음.
- 한국교육방송(EBS)은 아시아 여성 한국어 프로젝트- 한국말이 쉬워요」라는 제목으로 2006년 9월 2일부터 매주 토요일 아침 20분간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5회에 걸쳐 방송하였고, 한국국제노동재단에서는 2006년 「외국인근로자 통역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영어·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로 외국인근로자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통역 및 상담분야가 노동 관련으로 제한돼 있어 결혼이민자의 각종 생활상담 및 적응을 위한 통역서비스는 부족한 상황임.⁷⁾
- 여성가족부는 2006년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한국어 및 문화이해 교육·상담·출산 전후 가사 도우미 지원·한국어교재 및 모성보호가이드 발간·배포와 정서적 지원을 위해 멘토(친정어머니 또는 후원가족)매칭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7)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2007) p.49

- ‘찾아가는 서비스’는 수혜자에게 전액 무료로 지원되고, 사업관리기관과 사업 운영기관을 이원화하여 운영함. 특히 사업운영기관은 지역별 여건 및 결혼이민자 체류현황 그리고 지역적 안배 등을 고려하여 4개 기관 이상을 선정함. 2007년에는 6개의 사업운영기관을 통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2006년 한 해 동안 전국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21개소를 운영하여 결혼이민자의 사회 정착에 필요한 한국어·문화 교육·상담을 실시함. 또한 ‘결혼이민자가족 여름캠프’, ‘결혼이민자 남편들의 모임’, ‘지구촌 음식기행’ 등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이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006년 12월까지 약 8만여 명의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참여했음.

- 정부는 2007년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17곳에 추가로 신설하여 현재 전국에 38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려는 적극적 노력으로 평가됨.

|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성과 및 추진실적(2006) | |
|---|----------------------------------|
|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도 - (한국어교육 및 다문화교육·가족생활상담 목표 인원 총 1,200회 대비) 한국어교육 1,505회 / 다문화교육 404회 / 상담 107회 / 자녀지원 377회 ⇒ 총 2,393회 실시 | |
| 구분 | 사업실적 |
| 한국어, 다문화, 상담, 자녀지원 | 실행가정 : 178가정 실시횟수 : 2,393회 지원 |
| 모성보호지원 및 출산도우미 파견 | 실행가정 : 58가정 실시횟수 : 682회 지원 |
| 멘토 매칭 | 실행가정 : 83가정 활동가 : 80명 |

| | |
|--|----------------------------------|
| 자조집단 구성 | 국가 수 : 6개국 자조집단 수 : 15개 집단 구성 |
| <p>○ 자체평가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추진에 힘입어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함 <p>○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 교육 후 한국어수준 향상 88% 한국어교육이 유익하고 재미있음 91% - 출산 도우미 : 산모지원 친철도 96.5% 도움이 되었음 100% | |

※ 자료 : 여성가족부, 「찾아가는 서비스 실적」, 2007. 8

나.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한 지원

- 결혼이민자 가정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2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에 두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국적취득을 못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국제결혼 배우자도 생계·주거·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자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됨. 특히 의료지원은 그간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자만을 대상으로 무료진료가 시행됐었으나 입원비 및 수술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무료진료사업을 통해 국적 취득 전 외국인 여성과 그 자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정신보건센터의 상담 및 재활서비스, 지역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 등 공공의료체계의 몇몇 서비스에 대해 국적 취득 전 외국인 여성도 지원대상이 됨. 결국 결혼이주민 여성에 대해 복권기금으로 지방의료원 34개소, 적십자 병원 6개소, 시·도인증기관 17개소에서 1인당 500만원이내 입원 및 수술비를 지원받도록 한 것임.⁸⁾
- 2006년 12월 「모·부자복지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함. 개정안에서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부자복지사업 대상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음.
-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법」은 지침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임신 중에 있는 자,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후 이혼하였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외국인 남성도 수급권자에 포함)에 대해서 생계 및 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노동부에서는 고용지원센터 및 워크넷을 통해 취업연계 및 구직신청, 일자리 정보 탐색, 사이버 취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국적 취득 전의 결혼 이민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직업훈련의 경우도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전직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

8) 문순영,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 통권 72호) (2007)

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과거에는 가정폭력으로 가출을 한 경우 결혼이민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신원보증을 해지하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컸음. 그러나 현재는 결혼이민자가 가정폭력 등의 피해로 상담소나 쉼터에 지원요청을 할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면 한국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신고 및 신원보증해지 신청만으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가정폭력과 성폭력 및 학대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해 2006년 11월부터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6개 언어를 통해 피해여성과 같은 국적의 여성으로부터 상담 받을 수 있음.
- 센터에서는 시·도 1366센터와 상담소·보호시설·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의료·법률·경찰 등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에 2006년 10월 29일부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 등을 2년 범위 내에서 보호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현재 인천과 천안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 수요를 파악한 후 점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 • 이주여성 보호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 •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 정원 | 현원 | 종사자수 | 지원 예산액 | | | | | |
|----|----|----|------|--------|-----|-----|-----|-------|-----|
| | | | | 2006년 | | | | 2007년 | |
| | | | | 예산액 | | 집행액 | | 예산액 | |
| | | | | 국고 | 지방비 | 국고 | 지방비 | 국고 | 지방비 |
| 합계 | 20 | 15 | 7 | 87 | | 87 | | 92 | |
| 인천 | 10 | 8 | 3 | 30 | 13 | 30 | 13 | 30 | 13 |
| 천안 | 10 | 7 | 4 | 31 | 13 | 31 | 13 | 33 | 16 |

※ 자료 : 여성가족부, 「이주여성 보호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 2007. 8

라. 출산 및 자녀양육과 학교생활 적응지원

- 국제결혼가족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모성보호 가이드」를 4개 언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국문을 함께 수록하여 발간함.
- 건강보험에 가입한 저소득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저소득 임산부 및 6세 미만 영유아를 지원하는 보충영양사업 및 건강보험에 가입한 저소득층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영유아 예방접종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도록 하고 있음.
- 「2006년 아동복지사업안내 지침」을 개정(2월)해 결혼이민자 자녀는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9)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지원이 필요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서는 결혼이주민 가족도 영유아 보육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가 국적 취득 전이라도 아동의 국적이 대한민국이거나 이중국적자로 적용대상 기준에 포함되면 국내 아동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음.

- 여성가족부에서는 2007년부터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과 특히 취학 전 아동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지원하고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의 언어지도, 건강 및 영양지원, 보육시설 및 학교생활준비 지원, 자녀보호, 육아방법 지도, 다문화 이해 및 관용을 위한 프로그램 등 유아의 발달 특성과 가정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

- 국제결혼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5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을 발표함. 이에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보급함. 또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 및 존중을 위한 교육 강화와 집단따돌림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3.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정책의 문제점

가. 상업적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감독체계 미비

- 현재 지나친 이윤추구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체계가 미비한 것이 첫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들 결혼중개업체들은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주를 유도하는 등 인신매매¹⁰⁾적 성격의 결혼을 중개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그 심각성이 깊어지고 있음.
- 결혼중개업체들의 허위 정보 제공과 함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나치게 짧게 설정한 맞선 기간은 결혼 자체를 불행하게 하는 시작점이 되고 있으며, 상대 국가의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들로 인해 국가 간의 외교 마찰을 일으키기도 함.
- 상업적 결혼중개업체의 무분별한 영리추구의 한 예로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붙어 있는 국제결혼과 관련된 인종·성(性) 차별적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들 수 있음.

10) 인신매매(trafficking)에 대한 정의와 국가의 대응을 명시한 것은 2000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채택되고 같은 해 12월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서명된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및 3개 부속의정서(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불법입국, 불법무기 방지 의정서)임.

그 중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는 국제적 인신매매에 대한 각국 정부의 법률적 조치 규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최근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의 동남아 국제결혼 광고물 ‘베트남(여성)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등을 ‘인권침해 사례’로 분류하였음. 이 보고서가 국내외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제적 망신은 물론 국내 거주 중인 베트남인들의 항의를 받았음.
- 국가적 불명예 사건 후 2007년 7월 14일-27일(14일간) 간 전국 16개 시·도별로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현수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729건을 적발함.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1,700건이 넘는 단속실적을 보더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하며, 568건으로 가장 많은 단속건수를 기록한 전북과 충남(268건)·경북(265건) 지역에 대한 관리·감시 체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함.

● ● 국제결혼 관련 불법현수막 단속결과 ● ●

| 시 도 | 서 울 | 부 산 | 대 구 | 인 천 | 광 주 | 대 전 | 울 산 | 경 기 | 강 원 | 충 북 | 충 남 | 전 북 | 전 남 | 경 북 | 경 남 | 제 주 |
|-----------------|--------|--------|--------|--------|--------|--------|--------|--------|--------|--------|--------|--------|--------|--------|--------|--------|
| 정비 실적 (건) | 2 | 25 | 18 | - | 5 | 7 | 61 | 123 | 104 | 78 | 268 | 568 | 96 | 109 | 265 | - |
| 계 | 1,729 | | | | | | | | | | | | | | | |

※ 자료 : 행정자치부, 「국제결혼 관련 불법현수막 단속실적」, 2007. 8.

- 이처럼 ①회원모집을 위한 인권 침해적 내용의 광고 ②한 시간 안에 20~30여명, 많은 경우 200~300여 명과 맞선을 보는 속전속결식 진행 ③상대국가의 단속을 피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결혼대상자에 대한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정보 제공 및 건강검진 등 사전 검증 절차의 미흡 ④결혼성사에만 치중해 통역·상담 등 사후지원 부족 ⑤국제결혼 지불비용과 지참금 등의 과도한 추

가비용¹¹⁾ ⑥베트남의 경우 합숙기간 동안 생활비의 부채화, 불법적 계약서작성¹²⁾·합방강요·처녀막 재생 수술 및 산부인과 검진 등 인권유린의 문제들이 제기됨.

- 상업화된 국제결혼중개업체로 인해 위장 및 사기결혼이 급증하고, 비용부담에 있어 남성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 결혼중개업체와 한국 국민,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들의 악순환적인 현재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도록 중개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합법적인 과정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혼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

- 국제결혼이 성행하면서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일선에서 각 지역 총각들 장가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결혼이라는 중대사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전국 지자체의 24.7%인 60여 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¹³⁾

11)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정책토론회 자료」(2006.4)

- 국제결혼을 위해 중개업체에 지불하는 요금은 국가. 체재비, 항공료에 따라 상이함.
- 중국(709만원), 필리핀(788만원), 베트남(949만원), 몽골(1020만원)
- 공식적 경비 외에 지참금(베트남의 경우 \$1000) 추가비용 지불
- 요금 납부 방법은 선불, 분납, 후불제 형태로 운영됨.

12) 한국입국을 거부 할 경우 1만 달러의 위약금과 입국 후 3개월 안에 별다른 이유 없이 외국인 여성이 이탈할 경우 2500-3000달러를 친정부모가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불법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례로 굳혀진 것으로 보임.

김민정, 이주여성인권연대, 「베트남 여성 한국입국과정을 통해 본 반인권적 중개행태」(2007.7)

13) 2007년 6월 7일자 ‘파이낸셜 뉴스’ 7면

- 문제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 상대국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국제결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내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국제결혼 중개과정의 전체적인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알지 못한 채 결혼중개업체에 비용만을 지불하여 문제점을 키우고 있음.
-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한국의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철저한 감독과 규제 없이 상대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업적인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묵인·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으로 농어촌 총각들과 결혼이민 여성 모두를 피해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 농어촌 총각들이 결혼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에 대한 대책으로 무분별한 국제결혼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상업적 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만을 부추길 수 있음.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현재의 사업에 대해 재검토해보고 사업추진에 대한 정당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다.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체류 및 국적취득 문제

- 2005년 전후만 해도 결혼이민자 중 여성은 남편의 사망·이혼 후 아이의 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계속적인 폭력에 노출돼 이혼을 한 경우에도 2년 이상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방법이 없었음.

- 법무부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데 있어 공인된 여성결혼 이민자 관련 단체의 사실확인서와 실태조사를 통한 귀책사유의 입증책임을 규명할 때까지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체류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결혼비자를 통해 입국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파탄에 대한 입증책임을 증명하고 이혼이 이뤄진 경우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국내에 머물도록 하고 있음.
- 2005년 배우자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총 75,011명으로 2005년 외국인과의 혼인건수가 43,121건이라 보면 이미 31,890명이 2005년 이전에 배우자 자격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 생활하고 있는 것임. 배우자 자격의 경우 2년간의 기간이 주어짐으로 매년 조사하는데 있어 중복되는 경우가 나타남.

• • 배우자 자격(F-2-1, F-1-3 /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 •

(단위 : 명)

| 연 도 별 | 계 | 성 별 | |
|------------------|---------------------|-----|--------|
| | | 남 | 여 |
| 2005. 12. 31. 현재 | 75,011 (131%) | 남 | 8,352 |
| | | 여 | 66,659 |
| 2006. 12. 31. 현재 | 93,786 (125%) | 남 | 10,958 |
| | | 여 | 82,828 |
| 2007. 7. 31. 현재 | 104,749 (111.7%) | 남 | 12,378 |
| | | 여 | 92,371 |

※ 자료 : 법무부, 「배우자 자격(F-2-1, F-1-3 / 국내 체류) 외 국인 현황」, 2007. 8

※ ()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 국적취득 전인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거나 여성결혼이민자 관련하여 공인된 단체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고 이혼 한 후 한국에 계속 남길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대부분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게 됨. 그러나 현재 결혼이민자가 이혼한 후 배우자 자격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신청 및 허가 현황에 대해서는 취합이 어렵다고 함.

- 기존에 폭력의 유무와 상해 정도에 대한 진단서도 증거자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단체의 사실확인서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일지, 그리고 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언어소통이 어렵고 한국의 법체계 등 사회전반의 실정에 대해 알기 어려운 이주여성들이 과연 입증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무엇보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한국 내에서의 안정적인 체류가 불가능하므로 자녀와 이별해야 함. 결국 국적취득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인 자녀양육과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장기적이고 합법적인 체류권 보장이 중요함.

(사례) 메리 제인 라우론씨의 '용감한 홀로서기'

필리핀 출신의 메리 제인 라우론(30)씨는 2002년 한국인 남편 김모씨와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꿨으나 남편의 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딸 민아를 데리고 지원시설로 피신함.

그 후 딸과의 언어소통을 위해 한국어 공부를 하고, 한국사회에서 딸과 함께 직업을 얻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녀 자신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선을 무색케 하는 “필리핀으로 안 돌아갈 거다. 한국생활이 힘들어도 이곳이 우리 민아가 태어난 나라이고, 이젠 내 고향이다.”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침.

※ 자료 : 내일신문, 2007년 7월 23일자 21면

IV

선진국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¹⁴⁾



14) '선진국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은 여성가족부가 2006년도에 발간한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와 국회도서관의 입법참고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임. 선진국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가 극히 적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도 용역보고서 이외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1. 영 국

가. 이민정책 및 결혼이민자의 시민권취득

- 영국의 이민자통합 정책은 동화모형¹⁵⁾을 바탕으로 한 포용정책을 지향하고, 자국의 경제에 이익이 되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이민을 적극 수용하고 있음. 영국 정부는 이들이 자국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영어와 영국 생활지식 등에 관한 테스트 통과를 전제로 시민권을 줌.
- 비숙련 이민자들은 공공 복지혜택의 수혜자로서 경제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민 수용을 기피하고 있음. 이들은 ‘취업허가’를 받아 한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함.
- 영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민 신청자와 불법 이주자로 인해 이민과 난민이 주요 사회문제로 부상함. 영국 정부는 합법적인 이민 경로를 강화하고 불법이주를 통제하는 등 이민 및 난민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음¹⁶⁾. 하지만 자국 국민이나 영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그리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15)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2006), p.263

동화모형(assimilationist model)은 이민자를 일방적으로 유입국 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으로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문화·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유입국의 주류 사회 성원들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음. 이는 유입국 사회가 자국 사회의 성원이 되기를 원하는 이민자에게 문화적 동화를 대가로 하여 ‘국민’으로 합류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책이며, 이민자들은 출신국의 고유성을 잃고 유입국 국민으로 융해됨. 결국 이민자 입장에서 동화는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기억·정서·태도 등을 획득하고, 그들의 경험과 역사를 공유함으로써 공통의 문화생활 속으로 통합되는 해석과 융합의 과정’으로 정의됨.

16)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 「영국이주민 관련법」(2007.8)

- 영국 정부는 영국인 또는 영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하였거나 사실혼 관계를 지속해 온 외국인 배우자에게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동반자 사증(결혼사증 또는 정주사증)을 발급해 주고 있음. 결혼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별도의 취업허가 없이 영국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하고 사회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음. 그리고 결혼사증을 소지하고 부부관계를 지속하여 2년이 경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영주권 취득 후 1년 뒤 시민권의 취득 자격이 부여됨.
-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영국도 ‘결혼이민자’에 대해 영주권자에 준하는 지위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영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다만, 영주권자는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¹⁷⁾의 행사에서는 제외됨.
- 외국인이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다음의 11가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18세 이상 성인, ② 영주권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사람(신청하기 전 최소한 5년 영국에서 거주, 결혼이민자는 최소한 3년 거주), ③ 최근 1년간 90일 이상을 해외에 거주하지 않았을 것, ④ 5년간 450일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지 않았을 것(결혼이민자는 3년간 270일), ⑤ ‘공무로 인한 해외근무’(Crown service)를 하고 있는 영국인의 배우자는 영국 내 거주 기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⑥ 영국에 계속 거주할 계획, ‘공무로 인한 해외근무’(Crown service) 또는 영국이 회원국인 국제기구 근무, 영국계 회사 또는 영국 관련 기업에서 근무할 계획이 있어야 함, ⑦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not be of unsound mind), ⑧ ‘좋은 성격’(good character)의 소유자(영국인 2명의 추천서 필수), ⑨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영어 또는 웨일스어·스코틀랜드어·게일어 실력, ⑩ 영국 생활에 대한 충분한 지식, ⑪ 전과자의 경우 법정 기간이 경과했을 것.

17) 영국정부는 다양성(diversity) 추구 정책의 일환으로 경찰 등 일부 공무담임권을 시민권자에서 영주권자로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음.

-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시민권 취득을 위해 5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첫째가 영어·영국생활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로 2005년 11월 1일 이후 ‘영어구사력’과 ‘영국생활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을 요구함. 이는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인 동시에 영국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 둘째, 영국 시민권자 2명의 추천서로 3년 이상 살아왔던 사람이어야 하며, 친척이나 에이전트가 아닌 25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함.
- 셋째, 지난 3년간의 기록이 있는 여권으로 이를 증명할 여권이 없는 경우는 고용일이 명시된 고용레터, 급여명세서, 납세서류, 학교출석증명서(학생인 경우), 직장이 없는 경우 실업수당이나 기타수당 수령 시 받았던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 넷째, 배우자의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영국인과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영국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제출)와 마지막으로 결혼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는 영국인과 결혼한 경우만 해당됨. 귀화 신청서가 통과된 후 신규 국적취득자는 90일 내에 지방정부와 접촉하여 거주지 시청에서 열리는 ‘시민권 축하 의식’에 언제 참석할 것인지를 내무부 이민·국적청에 알려야 함. 만약 90일 이내에 아무런 사유 없이 의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 자체가 취소됨.
- 시민권 자격조건을 만족시키고 입증서류들을 제출한 후 영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인 영국인과 동등한 권리 및 의무를 지니게 됨. 그리고 영국 정부는 국적취득자들이 경제적·정치적으로 적극적 역할을 하고, 영국 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갖기를 기대함.

나. 이민자 통합정책

- 사실 영국은 결혼이민자를 위한 통합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 단지, 1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를 위해 지방정부의 평생교육 시설에서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와 ‘영국생활방법’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실상 전부임.
- 이는 영국 정부가 이민에 대해 ‘이민자’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기업 활동으로 여기기 때문임. 영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일한 이민자 집단은 난민인정자(recognised refugees)로서 그들은 의료·교육·주거·고용 등의 통합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받고, 영국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짐. 여기서는 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지원 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한국의 결혼이민자 통합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영국은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독립적 법률은 마련하지 않고, 난민과 망명신청자를 위한 통합조치와 그들의 권리를 법률에 명시함. 이민자 통합과 관련된 기타 법률로는 2002년 제정된 「국적 이민 망명법(Nationality, Immigration and Asylum Act 2002)」이 있음. 이 법은 이민법 위반자들의 퇴거 및 난민 신청 과정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성매매와 인신매매·밀입국 등의 조직범죄를 차단하는 조항을 포함해 기존 이민법의 미비점을 개선함.¹⁸⁾ 2004년엔 「국적·이민·망명법(Nationality, Immigration and Asylum Act 2002)」의 시행령을 보강한 「난민·이민(신청자 등의 처리)법(Asylum and Immigration (Treatment of Claimants, etc.) Act 2004)」이 제정됨.

18)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 「영국이주민 관련법」(2007.8)

이 법에는 장기 거주를 막기 위한 난민 신청 절차의 신속화, 신규 접수 요건의 강화, 숙박 및 퇴거 센터의 추가 설치, 신청 거부자의 상소 권한 축소, 거부된 신청자의 추방을 신속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제58조에는 불법 이민자의 자발적 귀환 및 귀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내무부 장관 명령에 의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프랑스

가. 이민정책 및 국적취득

-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비교적 관대한 이민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로 ‘동화 모형’의 전형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평가됨. 프랑스 정부는 이민자가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상, 프랑스 사회에서 추구하는 기본 이념을 따라야 한다는 강력한 동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민자는 프랑스어를 익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야 하고, 이민자 자녀 중 프랑스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아이는 특수반에서 집중적으로 프랑스어를 배우게 됨. 이처럼 프랑스 정부는 이민자들에게 프랑스어와 기술을 가르쳐주고 프랑스 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 쉽게 동화될 수 있도록 함.
- 프랑스는 인종차별에 관해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그러므로 이민자들에게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령연금 혜택을 부여하고, 합법적 체류허가와 취업허가를 받은 이민자와 그들의 배우자 및 자녀 등 부양가족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정상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인 가족수당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 내국인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음.
- 프랑스 내에서 결혼이민자의 입국과 체류허가(체류증)·영주권(거주증)·시민권 등에 관한 업무는 인구·이민국(DPM : Direction de la Population et des Migrations)에서 담당함. 이민자가 체류증 또는 거주증을 받기 위해선 ① 프랑스 설립과 공화국 정신에 대한 이해 ② 충분한 프랑스어 능력 ③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이행, 공공서비스 등 사회적 권리에 대한 이해의 기본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정부는 ① 하루 일정의 시민 오리엔테이션 교육(통역 배치, 영상물 시청 등), ② 500시간 이상의 프랑스어 교육, ③ 이민자에 대한 행정 지원 서비스 제공, ④ 직업·자녀교육·가족보조금 등 ‘기본 사회적 서비스’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프랑스에서 살기’(Vivre en France)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함.
- 외국인이 프랑스인과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호적초본, 미혼증명서 등의 서류를 출신국 대사관을 통해 공증해 제출해야 함. 또한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미리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장기체류가 가능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함. 입국 후에는 거주지 경찰청에서 ‘임시체류허가증’(carte de séjour temporaire, 체류증)을 발급받음. 결국 결혼이민자는 ‘사회적으로 출생한 프랑스인’으로 간주되어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보장받음.
-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의 국외 거주 가족은 가족동반사증을 받아 프랑스에 올 수 있음. 2007년 상반기부터 발효될 예정인 ‘이민·통합법’(immigration and integration law)에 가족 재결합(regroupement familial)에 대한 요건¹⁹⁾이 강화됨(Murphy, 2006). 이는 ① 이민자로부터 프랑스의 가치를 존중하도록 하고, ② 이민자의 프랑스 사회 통

19) 가족 재결합 요건 : ① 가족 재결합은 EU국가 출신이 아닌 외국인이 프랑스에 있는 가족과 결합하기 위해 체류증을 받는 제도로 유럽공동체 인권법의 적용을 받음. ②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재결합을 위해서는 적어도 프랑스에서의 체류기간이 18개월 이상이어야 함(2006년까지는 12개월이었음). ③ 최저임금(salaire minimum de croissance: SMIC) 이상의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함. ④ 프랑스 내에 합법적인 거주지가 있어야 함. ⑤ 정교분리원칙, 남녀평등, 일부일처제 등 ‘프랑스인의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가치’를 위배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함.

합을 촉진하며, ③ 강제결혼 또는 복혼(複婚)에 대한 투쟁 등의 목적을 내포하고 있음.

- 2006년까지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결혼 후 2년간의 동거사실을 입증하면 자동적으로 '거주증명서'(carte de résidence, 거주증)를 발급받거나 귀화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2006년 7월 25일 '이민·통합법' 개정으로 프랑스인의 배우자도 거주증 신청을 위해 3년을 기다려야 함. 또한 프랑스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 혼인관계를 자동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거주증을 받기 위해선 '프랑스어 시험'에 합격해야 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체류증 소지자는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고 취업에 관한 체류증과 거주증은 유효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효력에는 차이가 없음. 한편 복혼 사실이 밝혀지거나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프랑스 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거주증의 효력은 상실됨. 단, 출국 전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 사유가 인정될 경우는 예외임.
- 국적취득에 있어 국내 거주 부부는 4년, 외국 거주 부부는 5년 동안 같은 생활공간에서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얻을 수 있게 됨. 이처럼 결혼이민자들의 시민권 획득에 있어 소요기간의 연장은 '위장결혼' 방지대책이라 할 수 있음.
- 불법체류자로 10년을 살 경우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던 기존의 관용정책을 폐지한 것을 보더라도 우수한 인력확보를 위한 '선택적 이민'(immigration choisie)의 원칙과 관련이 있어 보임.

나. 이민자 통합 정책

- 2006년 7월에 의회를 통과한 ‘이민·통합법’에 의거해 프랑스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 출신 이민자와 외국에 거주하는 프랑스 출신 이민자를 지원함.
- 이민자와 관련된 업무는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데, ‘사증’ 업무는 외무부, ‘체류증’ 업무는 지방 경찰청, ‘거주증’ 업무는 내무부, ‘국적(시민권) 취득 관련 업무는 법무부, ‘이민자와 그 자녀의 교육’은 교육부에서 담당함. 그리고 ‘이민자 사회 통합 업무’는 ‘고용·사회결속·주택부’에서 수행하고, 각 부처의 의견 조정은 ‘통합에 관한 각부 공동 위원회’에서 맡고 있음.
- 통합 조치 사항들을 보면 ‘인구·이민국’에서 이민자들의 프랑스어 교육에 연간 약 6천만 유로의 예산(2005년 기준)을 지출함. 실제로 중앙정부는 예산만 지원하고 교육은 각 지방 교육기관 및 시민단체가 맡아 수행함²⁰). 그리고 지방의 공공서비스 기관 대표들로 구성되고, 도지사의 책임 하에 운영되는 ‘시민권에 접근하기 위한 도별 위원회’(Departmental Commissions for Access to Citizenship: CODAC)가 있음.
- ‘시민권에 접근하기 위한 도별 위원회’는 이민자 젊은이들이 고용·주거·여가활동 및 행정기관과의 관계증진을 지원하고,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들의 고충을 접수함. 또한 고용주·일반국민·이민자공동체의 인식을 고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차별관행지수(incidences of discriminatory practices)를 평가해 여러 가지 제안서를 작성함.

20)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 「프랑스이주민 관련법」(2007.8)

프랑스의 ‘동화 및 차별방지 복지지원기금(FASILD : Fonds d’action et de soutien pour l’intégration et la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은 이주민의 차별방지를 위한 것으로 특히 교육부문에 지원됨. 인구·이민국(DPM)의 2003년도 예산은 3억4천만 유로로 이중 이주민의 동화를 위한 정부보조금(subventions) 형식으로 FASILD에 지출된 액수는 1억7천만 유로임. 그리고 난민 또는 망명신청자를 위한 수용시설을 포함한 사회부조 형식의 지출액은 1억4천만 유로임.

3. 독일

가. 이민정책 및 국적취득

- 독일 사회의 이민자들은 내국인과 동등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과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노동조합 가입에 제한이 없음. 또한 이민자와 그 자녀를 상담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하고, 직업훈련체계도 갖춰져 있음.
- 결혼이민자는 결혼사증을 신청해 입국한 후 독일인 배우자의 거주 지역 지방 정부에 결혼사증을 보냄. 이민관련부서에서 이에 대해 심의·결정한 후 연방 정부에 통보되면 입국 후 '체류허가'를 받음²¹⁾. '체류허가'를 받은 후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취업할 권리를 가짐. 단, 취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체류허가에 따라 결정됨.
- 체류허가를 가지고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된 독일 내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인 독일 정부에 '정착허가(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음. 정착허가를 가진 외국인인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고, 본국 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사증을 신청하면 수입 유무·거주 공간 유무·범죄 유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처리함.
- 결혼이민자의 귀화 신청은 독일에 거주한 지 3년 이상, 결혼생활 유지 2년경과 후 할 수 있음. 예외적인 몇몇 경우²²⁾를 제외하고는 거의 받아들여지며 다음의 9가지 요건을 갖춰야 함.

21) 한국인처럼 사증 없이 독일에 입국할 수 있는 나라 사람들은 혼인신고 완료입증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체류허가를 신청함.

22) 부부관계가 파탄 상태거나 별거 중 또는 이혼을 계획 중인 경우 그리고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된 '위장결혼'일 경우

- ① 귀화 신청을 해야 함.
- ② 범법행위로 인한 추방사유가 없어야 함.
- ③ 주택이나 거주지가 있어야 함.
- ④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어야 함. 즉, 실업수당·생계보조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단, 배우자가 부양능력이 있을 경우는 상관없음.
- ⑤ 지금까지의 국적을 포기해야 함.
- ⑥ 독일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함. 가령 독일어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함. 독일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면 독일어 시험을 따로 봐서 합격해야 함.
- ⑦ 독일 거주 기간이 3년 이상과 귀화 시점까지 2년 이상 결혼 생활이 유지되어야 함.
- ⑧ 독일 공화국의 공적인 이해를 두드러지게 침해하지 않아야 함. 가령 안보나 외교관계에 해가 되서는 안 됨.
- ⑨ 독일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고 '충성서약서'(Loyalitätserklärung)에 서명해야 함.

나. 이민자 통합 정책

- 결혼이민자 대상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없지만 모든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언어와 적응 교육 프로그램이 있음. 600시간의 독일어 교육과 30시간의 독일 사회·역사·문화·법률체계 등의 적응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됨. 독일은 2004년 기준으로 연간 약 2억 유로를 이민자 통합 정책에 투입하고, '독일어 교육과 사회적응 교육'을 중시함.
- 이민자 통합을 위한 독립 법률인 '이민법'은 외국인의 입국·체류·경제활동을 규제하고, 외국인의 통합을 촉진함. 또한 '고급 자질을 가진 비EU회원국

출신 외국인'이 '무제한 정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그리고 100만 유로 이상을 투자할 의사가 있거나 1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의지가 있는 기업가의 활동을 적극 권장함.

- 독일의 연방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 BMI)는 이민법 초안을 작성한 가장 중요한 부처로 외국인·난민·재외동포 귀환이민·국적분야에 대한 책임기관으로 산하에 연방이민·난민청과 연방행정청을 두고 있음. 이 중 연방이민·난민청(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은 이민자 통합을 위한 정책과 법률을 집행하고 이민정책을 총괄하고 있음.
- 주 정부(Länder)에는 외국인수입관(Ausländerbeauftragte) 또는 '다문화국' 등 이민자 관련 정책수립과 홍보활동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음. 이 부서들은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의회나 매스컴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기도 함. 시와 중앙 정부에도 유사한 기능의 부서가 있음.
- 독일에서의 가정폭력 문제는 대부분 경찰(die Polizei)이 맡아 처리하므로 이민자의 가정폭력 문제 또한 경찰이 바로 개입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연행한 후 10일간 접근금지 시킬 수 있음. 또한 가정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부와 연계해 법적 지원을 함.

4. 일 본

가. 국제결혼 현황

- 일본의 외국인 입국자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다인종·다문화 사회라 해도 무방할 정도임. 일본 법무성 통계에 의하면 2006년 외국인 입국자는 약 811만 명으로 전년 대비 65만 여명이 늘어나 지금까지 중 최고 수치를 나타냄.

• • 외국인 입국자 수 (법무성 통계) • •

(단위 : 명)

|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
| 입국자 수 | 5,286,310 | 5,771,975 | 5,727,240 | 6,756,830 | 7,450,103 | 8,107,684 |
| 신규입국자 수 | 4,229,257 | 4,646,240 | 4,633,892 | 5,508,926 | 6,120,709 | 6,733,560 |
| 재입국자 수 | 1,057,053 | 1,125,735 | 1,093,348 | 1,247,904 | 1,329,394 | 1,374,124 |

※ 자료 :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일본의 외국인 입국자 현황」,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 2007.8

- 일본은 법집행적 의미에서의 출입국관리정책은 존재하지만 사회정책적인 의미에서의 이민정책은 존재하지 않음. 그러므로 외국으로부터의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국인을 입국 단계에서 영주자로 체류허가해 주지 않음. 원칙적으로 영주권의 부여는 외국인이 일정기간 체류하고, 자격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 해 이뤄짐.²³⁾

23)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 「일본의 이주민 관련법」 (2007.7)

영주권 취득을 위해선 ① 정규의 체류자격으로 계속하여 10년 이상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자(유학·취학으로 입국한 자는 10년 중 5년 이상의 취로자격소지가 필요) ②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3년 이상 일본에 살고 있는 자 ③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 일본에서 국제결혼에 대해 정의된 법률용어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본인과 외국인의 결합을 대부분 국제결혼으로 생각함. 최근에는 일본 남성과 아시아계 여성의 결합으로 인한 국제결혼 수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국제결혼 가족이 형성되고 있음.

- 후생노동성의 2005년 혼인통계를 보면 전체 혼인은 714,265건으로 이중 부부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는 41,481건(5.8%)이고, 이 중 (일본남자+외국여자)의 혼인은 33,116건으로 부부 일방이 외국인인 전체 경우 중 79.8%를 차지함. 이는 일본으로 건너 온 여성들 중 국제결혼을 통해 정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농촌 총각들에게 배우자를 구해주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음.²⁴⁾

● ● 혼인 통계(1999-2005) ● ●

| 국적(출신지)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 총수 | 762,028 | 798,138 | 799,999 | 757,331 | 740,191 | 720,417 | 714,265 |
| 부부 모두 일본 | 730,128 | 761,875 | 760,272 | 721,452 | 704,152 | 680,906 | 672,784 |
| 일방이 외국 | 31,900 | 36,263 | 39,727 | 35,879 | 36,039 | 39,511 | 41,481 |
| 夫일본 妻외국 | 24,272 | 28,326 | 31,972 | 27,957 | 27,881 | 30,907 | 33,116 |
| 夫외국 妻일본 | 7,628 | 7,937 | 7,755 | 7,922 | 8,158 | 8,604 | 8,365 |

※ 자료 :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 2007.8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3년 이상 일본에 살고 있는 자 ④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5년 이상 일본에 살고 있는 자여야 함.

이 항목에 추가하여 “소행이 선량할 것”(전과 등이 없는), “독립된 생계를 영위할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질 것”, “일본의 국익에 합치할 것” 등이 필요 함. 단, 일본인과 영주자의 배우자, 어린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4) 임경택, 설동훈, “일본의 결혼이민자 복지정책”, (지역사회학, 제7권 제2호)(2006), p.8-9

- 외국인과의 혼인 증가와 더불어 이혼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2005년 총 246,228건의 이혼건수 중 15,689건이 외국인과의 이혼으로 6.0%를 나타내고 있음.

• • 이혼 통계 (1999-2005) • •

| 국적 (출신지)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 총수 | 250,529 | 264,246 | 285,911 | 289,836 | 283,854 | 270,804 | 261,917 |
| 부부 모두 일본 | 239,479 | 251,879 | 272,244 | 274,584 | 268,598 | 255,505 | 246,228 |
| 일방이 외국 | 11,050 | 12,367 | 13,667 | 15,252 | 15,256 | 15,299 | 15,689 |
| 夫일본 · 妻외국 | 8,514 | 9,607 | 10,676 | 12,087 | 12,103 | 12,071 | 12,430 |
| 夫외국 · 妻일본 | 2,536 | 2,760 | 2,991 | 3,165 | 3,153 | 3,228 | 3,259 |

※ 자료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 2007.8

나. 일본의 결혼이민자정책

-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일본 내에서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함.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언어문제 · 일본의 법과 제도에 대한 무지 · 지원체계 부족 · 이혼 후 체류 문제 · 아동문제 등 현재 한국 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들과 유사함.
- 일본에서의 국제결혼 방식은 3가지로 나타남. 첫 번째는 행정주도형 국제결혼으로 이는 국제결혼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주로 필리핀을 대상국으로 하여 성행하였음. 이 과정에서 신랑 · 신부 후보자에 대한 자격조건이 제시되면서 인권문제를 들어 비판이 제기됨. 이 후 행정주도형의 국제결혼은 대부분 사라졌고, 전문결혼상담소를 통한 국제결혼이 이뤄지게 됨.

- 두 번째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방식으로 일본과 송출국의 국제결혼 희망자들로부터 접수를 받아 상업적으로 중매를 행하고 있음. 주로 일본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결혼 성사 시 성혼사례비를 징수함.
- 결혼중개업체의 알선 단계를 보면 ① 일본인 남성과 송출국 여성들로부터 상담 접수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으로 가입 ② 예비 신랑신부 신상명세서를 토대로 적절한 회원을 선택 ③ 맞선 상대자를 선택하고 사진이 포함된 신상 자료를 보내 3-4명으로 압축 ④ 간단한 결혼서류를 준비하고 맞선 일정을 잡음 ⑤ 맞선 후 마음에 드는 상대를 골라 결혼을 결정 ⑥ 약혼식 또는 결혼식을 거행하고 혼인신고 함 ⑦ 혼인신고 후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후 결혼생활 시작함.
- 세 번째는 개인적 연결망 활용형으로 신랑·신부가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만나 교제 후 결혼 하거나, 국제결혼 한 부부가 친구 또는 아는 사람들을 소개해 결혼하는 방식임.
- 세 가지 방식 중 국제결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방식은 시스템이나 형태에 있어 각 업자나 기관에 따라 매우 다양함. 이는 일본에서 결혼중개업이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허가나 인가제도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임.
-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제결혼중개업은 자유업에 속하므로 업체를 단속할 수 있는 독자적 법률은 없음. 이에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 보호법」을 통해 중개업체들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도 개인들의 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함.

- 국제결혼에 수반되는 입국수속과 관청에 신고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을 결혼업자가 대행하는 경우 '행정사서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하고, 이혼 등의 문제에 대해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됨.

- 일본 「국적법」에서는 외국인의 국적취득에 있어 출신국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있고, 「호적법」에서는 신분사항 란에 출신국과 함께 일본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기재되며,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얻게 됨.

- 결혼이민자 귀화 등의 과정을 통해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재일코리안·넛케이진 등 영주자 및 정주자·입관법에 근거한 정규입국자를 복지혜택의 대상자로 두는 한편 비정규입국자 또는 불법 체류자는 대상에서 제외시킴.

- 일본은 다언어·다문화 서비스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중이며, 외국인의 상담창구나 상담기관에서는 이중 언어 구사가 가능한 직원(bilingual staff)을 채용하여 외국인에 대응하고자 함. 한 예로 야마가타(山形)현에서 그 지역의 외국인 며느리 지원활동을 하는 야마가타JVC는²⁵⁾ 외국인여성을 위해 통역인 양성강좌를 개설하고 통역뿐 아니라 사회활동적인 업무를 실천할 수 있는 다문화 사회활동가(social worker)를 양성하고 있음.

- 특히 의료분야의 통역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비밀엄수의무와 중립의 입장을 지켜야 할 필요성까지 포함한 통역양성 훈련과 병원·보건소·시/구청 등 다양한 사회자원에 통역이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25) Japanese Volunteer Center의 줄임말임.

- 무료 혹은 외국인이 부담 없이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학비로 그들의 노동시간이나 생활시간을 고려한 일본어 프로그램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실제로 많은 자치체에서 가장 배려하는 분야이기도 함. 일본어 교육뿐 아니라 좀 더 빠른 적응을 위해 일본문화·관습·사회구조와 법·제도·의료 등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강좌도 개설함.
- 지역의 시민관(市民館)·공민관(公民館) 등 공적기관에서는 다문화 공생에 관한 기획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인과 결혼한 여성은 일본적인 가치관과 자녀 양육관을 가지도록 기대해 가족과 갈등을 일으키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일반시민에 대한 강좌와 함께 타문화의 아내나 며느리를 맞이한 가족의 이해를 촉구하는 강좌와 교류회가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의 외국인 대상 타문화이해강좌는 일본의 문화와 생활관습·가치관을 이해시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일본에 동화하는 것을 촉구하는 강좌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 당사자도 참가·기획하여 강좌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것임.
- 일본의 문화만이 아니라 의료·법률·행정서비스 등 일본의 사회시스템을 이해하고 외국인의 지역사회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함. 최근 일본에서는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일상생활문제나 요구에 관한 실태조사가 증가하고 있고,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

5. 대 만²⁶⁾

가. 대만의 결혼이주민 현황

- 대만은 이입(移入)인구에 대해 성격상 경제성(투자이민, 기술이민, 외국인노동자) 및 비경제성 이입(혼인이민, 探親 이민)으로 분류함.
- 2004년 내정부 警政署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 이민인구는 베트남 출신이 13만 6,97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태국(10만 9,395명), 필리핀 (8만 9,813명), 인도네시아 (3만 4,884명) 순으로 나타남. 그리고 2003년 말까지 대만 정부로부터 거류허가를 받고 정착한 중국 대륙 출신 인구는 8만 135명이었고, 홍콩 및 마카오지역은 5만 1.94명이었음.
- 대만인과 중국 대륙·홍콩·마카오 그리고 외국국적 인구와의 결혼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1998년 2만 2,905쌍(총 결혼 부부 중 15.7%를 차지)에서 2003년에는 5만 5,116쌍으로 증가하여 전체의 32.14%를 점하고 있음.
- 2005년 6월 30일 행정원 주계처(主計處)에서 발표한 「국정통계 통보」에 의하면 2005년 1~5월까지 대만에서는 6만 2,089쌍이 결혼하였고, 그 중 중국 대륙(홍콩 및 마카오 포함) 출신과 결혼한 사람이 5,918명,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이 6,845명으로 4.9 쌍 중 1쌍이 非대만인과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중 외국인 신부는 90%를 차지함.

26)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 「대만의 결혼이민자 정책」(2007.8)

- 동 기간 이혼한 쌍은 총 2만 4,225 쌍으로 중국 대륙(홍콩과 마카오 포함) 국적자가 2,876명이었고, 외국인 국적자는 1,548명으로 평균 5.5 쌍의 이혼 중 1 쌍이 외국인과 이혼한 쌍인 것으로 나타남.

- 대만에서는 내국인 출입국관리업무는 내정부 警政署에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류 등의 업무는 내정부 경정서 혹은 직할시 시정부 경찰국이나 縣 정부에 위탁하고, 이민 지원 업무는 내정부에서 관리함.

- 2004년 내정부는 행정원에 최근에 수정된 ‘현 단계 이민정책강령’을 제출했는데, 그 요지는 경제성 이민의 장려 외에 외국국적 및 대륙 신부에 대해서도 인구정책을 적용하며 10여 년 동안 계속 실시하고 있는 이입(移入)은 엄격하고 이출(移出)은 너그럽게’라는 원칙의 이민정책을 재검토하여 조금 더 다원적인 이민정책을 채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 ‘강령’은 외국국적 배우자의 사회적응 문제에 있어 “인권을 존중하고 다원적 문화를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합법적 이입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을 정비하는 외에 ‘입국 전 지도’ 메커니즘을 정돈하여 각국 정부와 협력하는 것임.

- 대만 배우자와 그 가족으로 하여금 외국국적 배우자의 모국에 대한 사회문화적 풍속을 인식하게 하며, 동시에 대만에서의 생활 및 풍습과 민속·이민법령 및 관련 권리·의무 자문 등을 제공함으로써 양국 국민 간 결혼의 적응기를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 이민업무는 2007년 1월 2일 정식으로 설치된 내정부의 ‘입출국 및 移民署’가 관장하고 있으며, 이민 관련 법규로는 「입출국 및 이민법」(12장 90조, 2003년 2월 6일 수정), 「입출국 및 이민법 시행세칙」, 「이민업무기구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지도관리관법」, 「이민전문인원 훈련 및 검증 규정」, 「본국 현 단계 이민 지도조치」 등이 있음.

나. 대만의 결혼이민자 정책

- 대만 정부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적부여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취업에 서는 국민대우 수준을 추구하는 추세임. 그리고 결혼이민자에 대해선 중국 대륙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인 배우자의 거류자격 신청은 「출입국 및 이민법(出入國及移民法)」 제 21조 규정에 의해 체류·거류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주무부처의 심사를 거쳐 입국이 허가된 후 체류·거류 자격을 취득함. 거류자격을 취득한 후 15일 내에 주무부처에 외국인 거류증을 신청해야 함.²⁷⁾
-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은 「국적법」 제 3조와 제 4조 규정에 의한 “귀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2001년 국적취득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외국인이 귀화하여 대만국적을 취득할 경우 ‘경찰기록증명서’와 상당한 재산 혹은 전문기술을 갖추어 자립이 가능하거나 생활보장의 우려가 없는 자라는 증명이 필요함.

27) 친척 결합의 경우 사증 유효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있어서도 2002년 결혼이민자가 직접 행정원 노동위원회에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됨. 동시에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취업” 결혼이민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폐지됨. 이후 2003년 「취업서비스법」을 개정하여 결혼이민자에게 취업권을 보장해 대만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여 ‘취업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거류증이 없는 가정 폭력 피해 중국인 배우자에게도 일정기간 동안의 취업을 허용하고 있음.
- 대만도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혼인을 빙자한 매춘행위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결혼중개업에 대해 규제하기 위해 2003년 4월 내정부는 경제부의 협조 하에 공식적으로 결혼중개업²⁸⁾을 상법법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공고함.
- 「출입국 및 이민법」 수정 초안에 ‘결혼중개업의 관리방안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결혼중개업과 광고에 대한 관리강화를 추진하고, 행정원 경제건설위원회는 중개업자의 비용수취 표준을 관련법규에 포함하여 비용수취는 원가의 2배를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중벌에 처한다고 규정함.

다. 결혼이민자 복지정책

- 사회보험의 경우 4개월 이상 합법적 체류한 자에게 국민건강보험 가입조건이 부여되며, 취업 시 노동자보험 및 직업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고 있고, 거류증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도 사회보조기금을 통한 기초의료가 제공됨.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보험유효기간 동안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음.²⁹⁾

28) 전문적으로 결혼기회를 제공하거나 혹은 결혼대상을 소개하며 일정한 비용을 수취하는 업종으로 정의됨.

- 공적부조의 경우 저소득가구 책정 시 결혼이민자의 수입을 가구 총수입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기존 저소득가구가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공적부조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는 폐단을 최소화하며, 신분증 미취득 및 특수상황에 처한 결혼이민자³⁰⁾를 보호하기 위해 2004년부터 규정을 확대해 신분증 취득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긴급생활부조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
-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의한 신체안전 보호 조치와 심신장애자 복지·아동복지 및 노인복지를 제공하고,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위주의 생활적응, 교육기회의 제공, 자녀교육서비스 및 취업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정부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에 대해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보조대상은 직할시 및 현(시)정부와 직할시 및 현(시)정부의 위탁을 받은 재단법인 혹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되며, 이들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그밖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를 보호하는 단체 및 지방정부에 설비·정보·서비스추진 등과 관련된 제 경비를 보조해 주고 있음.

29) 위생서(衛生署)에서 지속적으로 결혼이민자의 국민건강보험가입을 독려한 결과, 2003년 12월말까지 거류증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의 보험가입률이 9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30) (1)남편의 사망 혹은 실종 (2)남편에 의한 악의적 유기 혹은 남편으로부터 동거할 수 없을 정도의 확대를 받았음을 이유로 이혼확정 판결을 받은 자 (3)가정폭력, 성폭력 혹은 기타 범죄의 피해자로서 의료비 혹은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4) 노동능력이 없는 단친(單親)이거나, 혹은 노동능력이 있어도 부상·질병으로 인해 혹은 자녀양육으로 인해 취업을 할 수 없는 자 (5) 남편이 1년 이상의 형 집행중인 자 등으로 이상조건의 호적설치 전 결혼이민자에게 지급되는 표준보조금은 다음과 같음.

① 긴급생활부조금 : 1인당 매회 최고 당해연도 해당지방정부 지정 최저생활비 3개월분을 지급 ② 자녀생활보조금 : 자녀 1인당 매월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1/10을 지급 ③ 탁아보조금 : 6세 미만의 자녀에게 자녀 1인당 매월 최고 1,500대만달러 지급 ④ 자녀교육비 : 공립 고등학교에 진학한 자녀에게 1인당 학비 및 잡비 총액의 60% 보조 ⑤ 법률소송비 : 1인당 매 년 최고 50,000대만달러를 지급 ⑥ 창업융자 보조 : 100만 대만달러를 6년간 융자해 주고, 처음 3년간은 이자 면제, 제4년부터 1.5%의 이자를 부담.

-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캄보디아어와 영어 등 다국어 판본의 가정교육 수첩을 제작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이 참고하도록 제공하고, 민간단체를 보조하여 결혼이민자의 가정교육 강좌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의 대만 생활의 적응을 돕기 위해 생활적응지원서비스³¹⁾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 및 우생 보건을 위해서도 ① 결혼이민자의 국민건강보험가입 적극 지도 ② “우생보건조치 감면 혹은 비용보조 방안”에 부합하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산전유전검진, 자궁내 피임기 및 난관수술 경비 보조 ③ 결혼이민자의 입국 전 건강검사 실시 ④ 결혼이민자 지속적 건강관리체계 수립 ⑤ 결혼이민자의 출산 및 건강관련 조사 실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무엇보다도 결혼이민자의 생활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지지망의 결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이민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녀양육지원과 자녀교육서비스³²⁾도 이뤄지고 있음.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가정교육 활동을 강화시키도록 격려하는 등 광범위하게 선전 및 지도활동을 전개함.

31) ① 생활 상황에 대한 전면적 조사 실시 ② 생활 적응 지도반 및 교사 양성 및 훈련 강화 ③ 결혼이민자의 대만 생활과 관련된 정보수첩 제작 및 선도 영화 제작 ④ 결혼이민자의 생활 적응과 관련된 자문 창구 제공 ⑤ 민간단체의 자원을 결합하여 지역성 서비스 조치 강화 ⑥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도와 서비스 조치 확립 ⑦ 민·형사 소송,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 ⑧ 결혼이민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지도 및 다국어 모의 시험문제 제작 배포 ⑨ 대만 주재 관련 국가기관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 및 국내 관련 정보 제공 협조 ⑩ 입국 전 지도 메커니즘을 정립하여 해당국 정부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적응 기간 단축 노력 등

32) ① 결혼이민자 자녀를 영·아동 건강 보장 시스템에 전면적으로 포함함 ②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아동발달 검사 강화 ③ 발달지체 아동에 대한 조기치료 서비스 제공 ④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언어 및 사회문화 학습 강화 ⑤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의 생활 상황 연구 ⑥ 결혼이민자 자녀 생활 적응 학술토론회 개최 ⑦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열등 환경 아동에 대한 가정교육 보충 활동 ⑧ ‘4·6세까지의 가정교육 비법’의 다국어교재 편찬 ⑨ 공립유치원 및 탁아소에 우선 진학 배려 ⑩ 정기적 교육방식 토론회 개최 등

- 대만정부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타문화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위한 선도활동을 강화하고, 다원적 문화와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다문화주의적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해 결혼이민자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도록 하는 문화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행복한 다문화가정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V

행복한 다문화 가정구현을 위한 정책제언



1. 결혼이주민 여성을 활용한 통역인력 양성

- 결혼이주민의 경우 한국생활 적응에 있어 언어문제는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정부에서는 한국생활 조기 적응을 위해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어 교재와 생활안내책자 등을 발간해 정착지원을 하고 있음.
- 결혼이주민들에게 한국어교육에 대한 지원만으로 끝나서는 안 됨. 늘어나는 결혼이주민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그들을 사회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현재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는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직업훈련이 포함되어 있고, 노동부에서는 고용지원센터 또는 work-net에 구직 등록한 취업희망자에게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을 하고 있음.
- 결혼이주민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워하는 이주여성들과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의 상담 및 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상담원으로 결혼 이주 여성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일본의 경우 외국인 전용 상담창구나 상담기관에서 이중 언어 구사가 가능한 직원(bilingual staff)을 채용해 외국인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야마가타(山形)현의 야마가타JVC³³⁾ 머느리로 온 외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통역인 양성강좌를 개설해 통역뿐 아니라 사회활동적인 업무를 실천할 수 있는 다문화 사회활동가(social worker)를 양성하고 있음.

33) Japanese Volunteer Center의 줄임말임.

- 한국도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bench marking)하여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민 여성들을 새로운 인력으로 확보하는 해야 한다고 봄. 이에 결혼이주민 여성 중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한 이주여성들에게 통역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의 상담원이 좋은 예임. 이들은 현재 3교대 근무를 통해 24시간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을 상담하고 지원해 주고 있음. 특히 같은 결혼이주민 여성이 자국의 이주민 여성에게 상담을 해줌으로써 통역서비스뿐 아니라 정서적 도움까지 줄 수 있어 효과가 있지만 이들도 결혼생활 중이고, 적은 인원으로 모든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에 대해 상담의뢰를 받고 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기존의 결혼이주민지원센터를 활용하거나 통역서비스 센터를 설립하여 결혼이주민 여성들을 통역원으로 양성한 후 보호시설(쉼터) 및 전화상담, 더 나아가 관공서 등 외국인 업무가 필요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주여성에게 있어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시스템이 될 수 있음.

- 결혼이주민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은 후 언어강사(대부분 중국이나 필리핀 여성)로 활동하거나 센터 내에서 통역원으로서 도움을 주는 이주여성들이 몇몇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형편임.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결혼이주민 여성들의 국적(약 93개국)이 다양해짐에 따라 한국인만으로 이들 모두를 통역해 줄 수 있는 통역자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결혼이주민 여성을 통역서비스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서둘러야 함.

2. 동일한 언어권 여성들의 쉼터 마련³⁴⁾

- 폭력과 차별, 무시 등 각종 피해들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결혼이주민 여성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보호 수단이라 생각하고 있는 이주여성 관련 단체 및 보호시설을 찾게 됨. 그러나 단체나 쉼터 등 보호시설로 피신해 오는 결혼이주민 여성들의 국적이 갈수록 다양해져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며, 치료를 도와주는 등 보살펴 줄 수 있는 있는 통역인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통역의 한계로 인해 깊이 있는 상담과 치료를 못하고,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보호시설 내의 입소자 간에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 표준화된 프로그램들을 적용하기도 어려움.
-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주여성들끼리 생활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쉼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규모는 작더라도 동일 언어권의 이주여성끼리 생활하게 되면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고 서로를 위로할 수도 있게 되면서 불안감을 떨쳐버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쉼터 내에서 한국어 및 한국 사회에 대한 총체적이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의료·법률·일반적인 생활 정보 등의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함. 이는 자칫 자국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위로받으면서 한국생활과 단절될 수 있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34) 여경순, 「쉼터개선토론회」, 모이세이주여성의 집, 2007.7

- 모든 국적에 대해 일일이 쉼터를 제공하는데 예산이나 인력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중국·베트남·필리핀 등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다수 국적의 이주여성만이 혜택을 받는 등 소수의 이주여성에 대해선 또 다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의 결혼이주민지원센터와 NGO, 이주여성 관련 단체 등과 연계하여 기존의 시설을 재활용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능한 한 모든 국적의 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더라도 안정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함. 그리고 이러한 쉼터에 자국의 결혼이주민 여성을 직원이나 통역원으로 고용한다면 더 큰 시너지효과 (synergy effect)를 기대할 수 있음.

3. 다민족·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 결혼이주민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및 성적 학대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 이주여성인 후인마이의 죽음으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 물론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은 그야말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제3자나 그 밖의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개입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음.
- 이러한 문제는 결혼이민자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있음. 남편들의 폭력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서 폭력의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음. 그리고 가정폭력뿐 아니라 온갖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서 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며 인격체로서 대우해주지 않는 등 인권보호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음.
- 정부는 가정폭력도 ‘폭력’이라는 범죄행위임에 초점을 맞추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함. 특히 한국인 중에서는 자신의 배우자 나라에 대해 알지 못 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 배우자들의 인식 변화가 시급함. 현재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및 시민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부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에 있어 양국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함.
- 최근 한국은 제네바에서 열린 ‘제 17차 유엔 인종차별위원회’로부터 현재 한국 사회의 다인종적 성격을 인정하고, 교육·문화·정보 등의 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바라며, 외국인 노동자나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난 자녀들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법제화하고, 다민족·다문화에 관한 내용을 교과목에 반영, 상업적 국제결혼에 의한 여성피해 문제 해결하라는 등의 권고안을 받음³⁵⁾.

- 외국인 100만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이 강함. 이제부터라도 다문화·다민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포용을 위한 전방위적 체제마련을 시작해야 하며, 한국형 인간으로의 무조건적 동화가 아니라 그들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들이 필요함.
-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정 정책 관련자들에 대해 다문화 교육을 추진하고,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표준 교재 제작 및 각종 민간 교육과정에 다문화 이해 관련 교육과정을 권장하는 등 교육 및 홍보 대책이 필요함.
- 일본의 경우 2006년 3월 이주민을 단순히 지원 대상으로 삼았던 기존의 정책에서 탈피해 공생관계로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완비되고, 인권이 보장되며, 다른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개방적인 태도가 확립된 지역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다문화공생 추진 플랜'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음.³⁶⁾
- 한국도 결혼이주민에 대해 가난한 나라에서 온 피해자나 지원과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선입견에서 탈피해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개인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함.

35) 조선일보, 2007.8.20일자 1면, '유엔, 한국 인종차별 없애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순혈(pure blood)'과 '혼혈(mixed-bloods)' 같은 용어도 한국사회에 널리 퍼진 인종적 우월주의를 드러내고, 이는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한국 땅에 함께 사는 다양한 인종들 간의 이해와 관용 및 우호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냄.

36)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2007, 4) '다문화공생 추진 플랜'의 기본시책 : 커뮤니케이션 지원(지역 정보제공의 다국어화, 일본어 및 일본사회에 관한 학습지원), 생활지원(교육·거주·노동·의료·보건·복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법률·의료 통역 상담 업무 등 전문인재 육성), 다문화 공생 지역 조성(이주민의 자립과 사회참여), 다문화 공생 시책의 추진체계 정비 등임.

4.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관리제도 도입

- 국제결혼에 있어 '중개업자'의 개입이 필수적인 사항이 되면서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위장·사기 결혼 및 허위정보 제공·인권침해 등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따라서 탈법적인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단속과 규제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
- 국제결혼 과정에서 양 국가간의 검증된 절차와 서류를 표준화하고 결혼사증에 대한 인터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혹시라도 불미스런 사건으로 인해 국가간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제결혼에 있어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체계마련이 필요함.
- 결혼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인권보호를 위해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인 베트남과 필리핀의 재외공관에 국제결혼이민관을 1명씩 파견하기로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조율과정을 거쳐 확정함.
- 1년 간 주호치민총영사관과 주 필리핀대사관에 시범사업 형식으로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해 주재국의 국제결혼정책 및 제도에 관한 자료조사와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됨. 국제결혼중개업체로 인한 허위·거짓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상업적·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 관행을 근절시키는데 사업이 돼 현재 국제결혼에 있어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결혼이민자뿐 아니라 한국인에 대해서도 탈법적인 행위를 하는 악덕브로커와 위장 및 사기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의 범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 조항이 필요하며, 인신매매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해선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한국에서의 체류를 원할 경우 적응 및 생활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줘야 함.

5. 다양한 적응교육 지원 및 체류제도 개선

- 영국·프랑스·독일에서는 외국인 등록 후 합법적 체류허가를 가진 자국인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에 대해 귀화 이전이라도 내국인과 동등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사회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음.³⁷⁾ 한국도 결혼이민자를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복지혜택에 있어 차등 없는 권리를 부여해 주도록 해야 함.
- 여성가족부와 문화관광부·노동부 등 기관별로 한국어 교재를 만들어 내는 등 지원정책들이 중첩됨으로써 예산과 인력낭비라는 지적에 대해 적응교육을 총괄하는 기구를 두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과 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함.
- 교재 제작에 있어서도 한국어뿐 아니라 의료·법률³⁸⁾·지역정보·상담소 및 이주민지원센터 등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거나 인터넷 사용 등의 실생활에 필요한 전문책자를 만드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귀화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자국의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결혼이민자들 간의 의사소통과 교류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37)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2006)

38)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노동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결혼이민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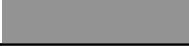
-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한시적으로 주어진 결혼비자는 최초 발급 후 2년 뒤부터는 매년 재발급 받거나 국적취득을 해야 한국에서의 계속 체류가 가능함.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비자로 체류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머물러야 함. 특히 결혼이주 여성의 체류문제는 이주여성 본인뿐 아니라 한국국적을 가진 자녀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임.

- 결혼이민자의 불안정한 체류문제는 불법체류 및 공문서위조 등 또 다른 탈법과 불법행위를 양산하게 될 소지가 큼.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국적취득과 체류자격 변경 제도가 마련돼야 함. 물론 거짓된 정보로 국적을 취득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해 한국에서 생활하려는 행위는 강력히 규제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 부처의 철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무엇보다 안정적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국제결혼에 있어 이혼으로 홀로서기를 결심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대부분이 취업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므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들이 다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

VI

참 고 문 헌



-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가족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2006
- 임경택, 설동훈, 「일본의 결혼이민자 복지정책」, 지역사회학, 2006년 제 7권 제2호
-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2007
- 김성미경, 「국제결혼 여성이주자의 삶과 문제」, 2006.6
- 여경순, 「쉼터개선토론회 자료집」, 2007.7
- 문순영,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 통권 72호, 2007
-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정책토론회 자료」, 2006
- 김민정, 「베트남 여성 한국입국과정을 통해 본 반인권적 중개행태」, 이주여성인권연대, 2007.7
- 통계청, 「2006년 혼인통계 결과」, 2007.3
- 통계청, 「2006년 이혼통계 결과」, 2007.4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2007.5
-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통계」, 2007.8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통계」, 2007.8
- 한국소비자원, 「결혼중개업체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2007.8
- 경찰청, 「위장결혼사범 단속실적」, 2007.9
- 법무부, 「결혼이주민여성/입국·체류목적 결혼 수용자 현황」, 2007.9
- 노동부, 「결혼이민자 여성의 취업현황」, 20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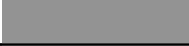
- 여성가족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2006.4
- 여성가족부, 「찾아가는 서비스 실적」, 2007.8
- 여성가족부, 「이주여성 보호시설 현황 및 예산 내역」, 2007. 8
- 행정자치부, 「국제결혼 관련 불법현수막 단속실적」, 2007.8
- 법무부, 「배우자 자격으로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 2007.8
- 법무부,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현황」, 2007.8
- 법무부, 「결혼이민자 중 불법체류자 현황」, 2007.10
- 국회도서관, 「영국이주민 관련법」, 2007.8
- 국회도서관, 「프랑스이주민 관련법」, 2007.8
- 국회도서관, 「일본의 이주민 관련법」, 2007.8
- 국회도서관, 「대만의 결혼이민자 정책」, 2007.8

행복한 다문화가정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VII

**부 록 : 국제결혼 피해 여성과의
인터뷰**

- 인천·천안 쉼터 방문 -



일시 : '07.8.25(토) 장소 : 인천 이주여성보호시설(쉼터)

※아래 내용은 인천 쉼터 방문 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안명옥의원>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다. 인터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그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힘들겠지만 얘기해 주기 바란다. 남편은 어떻게 만났나?

<고00>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 쪽에서 소개하는 사람이 남편을 데려왔고, 남편의 직업이 전도사고 현재 목사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자식 없이 혼자 살고 집도 있다고 했다. 전도사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길래 남편에게 믿음이 갔다. 그리고 남편의 깔끔한 외모와 얘기를 잘해서 마음에 들었다.

<안명옥의원> 중국에서 남편과는 몇 번 만나 결혼을 결정했나?

<고00> 처음 만났을 때는 5분 정도 얘기를 하고 헤어졌다. 그리고 다시 연락이 와서 만났고, 마지막에는 내 언니와 함께 나가 남편을 만났다. 언니도 남편과 얘기를 나누었고, 남편의 직업이 괜찮다며 결혼하라고 했다. 이틀 간 남편과 만났고, 이후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다.

<안명옥의원> 한국에 들어와 보니 처음 남편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들이 거짓이었음을 알았다고 하던데, 얘기해 줄 수 있나?

<고00> 한국에 들어와 1주일도 안 돼 남편의 과거 이력을 알게 됐다. 폭력전과 18번에 30년간 교도소와 감호소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고, 자기스스로를 '건달대장, 사나운 호랑이'라 하며 자신의 전과 사실을 자랑했고, 주먹을 휘두르며 날 위협했다. 전도사로서 교도소를 돌아다니며 전과자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활동을 한다고 했지만 정식적인 것은 아니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중국에서는 결혼증이란 것을 보면 결혼을 몇 번 했는지 다 나와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게 없어 남편과 만났을 때도 이 사람이 결혼을 몇 번 했는지, 감옥엔 갔다 왔는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다.

<안명옥의원> 남편이 본인을 의심하고 협박했다고 하던데...

<고00> 남편은 끊임없이 나를 의심하고 협박했다. “네가 한국 와서 얼마나 살겠냐?”, 한국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은데 한국에 자주 왔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하면 거짓말 말고 똑바로 말하라고 했다. 내가 아니라고 처음이라고 말할수록 화를 내고 주먹을 휘두르며 협박했다. 남편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묻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렇다고 말하면 언제, 왜, 며칠 동안 머물렀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다.

내가 여자아이처럼 말한다고 욕했고, 한국말을 빨리 배우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감옥에서 운동만 해서 누군가 한 대라도 맞으면 목뼈가 부러진다고 말하며 날 위협했다.

<안명옥의원> 남편은 주로 언제 폭력을 가했나?

<고00> 남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여기저기서 술을 마셔댔고, 한 번 술을 먹기 시작하면 몇 날 며칠 밤을 새며 체력이 바닥날 때까지 계속해서 마셨다. 그리고는 내 짐과 가방을 던지며 난 중국놈이고 옆에 있으니까 귀찮다며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했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트집을 잡았다.

한 번 술 마시고 트집 잡기 시작하면 밤에 잠도 못 자게 자기 옆에 날 앉혀 놓고 누굴 만났는지 왜 만났는지 만나서 뭘 했는지 물었다. 내가 만난 사람 없다고 하면 전혀 믿지 않았다. 결국 처음 남편의 폭력으로 코피가 나고, 입술이 터지고, 여기저기 멍이 들었다.

<안명옥의원> 혹시 남편이 고00씨와 결혼하기 위해 자신이 돈을 얻

마나 많이 썼는지 아냐는 식의 말은 하지 않았나?

<고00> 한국의 소개업체에게 얼마 정도 지불한 건 알고 있었고, 이미 심양과 연길에서 맞선을 본 경험도 있어서 중국여자와 결혼하려고 자신이 많은 돈을 들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에게 쓴 돈을 얼마 되지 않았다. 중국에서도 한국남성과 결혼하는데 있어 소개비 형식으로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한다. 그건 위장결혼이 아닌 남편이 마음에 들어 정말 같이 살고 싶어 하는 진짜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안명옥의원> 쉽터엔 어떻게 들어오게 됐나?

<고00> 남편이 술 먹는 자리에 날 불러냈고, 주변에서 술 먹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뤘다. 그리고 남편은 다시 나를 위협하기 시작했고, 보다 못한 가게 주인아주머니가 나보고 얼른 도망가라고 했다. 남편을 피해 쉽터로 도망 온 후 남편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해서 남편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폭력은 다시 시작됐고, 중국에 있을 때 어디를 다녔는지 뭘 했는지 물으며 대답을 안 하자 계속해서 때렸다. 결국 남편이 술병으로 머리를 쳐 두개골에 금이 갔고, 코뼈와 갈비뼈 4개가 부러지고, 눈물샘이 터졌고, 안구뼈· 무릎뼈가 골절되는 등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피가 멈추지 않자 남편이 나를 데리고 분당 차병원으로 갔고, 치료비가 30만원 정도 든다는 말에 남편이 다른 병원으로 가자고 했다. 그러나 의사가 나에게 남편이 이렇게 한 거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말하자 경찰을 불렀다. 그리고 남편은 경찰에게 잡혀갔고, 난 수술을 받은 후 쉽터로 오게 됐다.

<안명옥의원> 그럼 쉽터에 대해선 어떻게 알게 됐나?

<고00> 병원에 누워있는데 사회복지사란 사람이 왔다. 처음엔 누군지 몰랐다. 사회복지사가 나보고 남편 집으로 돌아가겠냐고 묻길래 싫다

고 했더니 쉽터로 보내줬다. 그 후 한 달 반 동안 병원치료를 받았고, 아직도 약을 먹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안명옥의원>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어떻게 지급했나?

<고00> 쉽터에서 해결해 줬다. (담당자의 말 - 쉽터에 분기별로 의료비가 100만원 지급되고 있으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달 반 동안의 의료비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최초 1회에 한 해 지원되는 서비스이므로 다시 지원받기는 힘들다.)

<안명옥의원>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면서 한국생활에 대한 기대는 없었나?

<고00> 더 좋은 환경에서 호화롭게 살 거란 기대보다는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란 평범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둘이 열심히 벌어서 재미있게 지낼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었다.

<안명옥의원> 남편과의 나이차이가 많이 나던데, 결혼할 때 신경 쓰이지 않았나?

<고00> 2006년 처음 만났을 때 57살이라 했고(실제로는 60살이었음), 한국사람은 결혼을 늦게 한다는 말에 남편의 나이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인도 만나봤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 부모님은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상관없으니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빨리 결혼하기를 바랐다.

<안명옥의원> 현재 아픈 몸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좀 더 쉬어야 하지 않나?

<고00> 아직까지도 머리가 울리고, 코와 머리쪽 감각이 둔하다. 계속해서 약을 먹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쉽터에서 지낼 수 있는 기간이

을 10월까지여서 지금부터라도 자립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핸드폰회사에서 조립과 세척하는 일을 하며 12시간씩 일을 하고 있다.

<안명옥의원> 현재 본인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건 뭐가?

<고00>집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쉼터를 나가서 생활한다는 것이 막막하다. 쉼터에서 몇 달 정도 더 지낼 수 있길 바랄 뿐이며, 한국에서 일하면서 계속 머무르고 싶다. 중국에서도 한 번 이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시 이혼한 후 중국으로 가고 싶지는 않다. 부모님보기도 죄송스럽고 아는 사람도 많다. 중국으로 돌아간다면 내 자신이 정말 싫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 것 같다. 이혼하더라도 한국에서 일하면서 혼자 살고 싶다.

<안명옥의원> 남편이 찾아와 화해하고 다시 살자고 하거나 협박할 수도 있는데...

<고00> 같이 살고 싶지 않다. 남편과 다시 살게 된다면 내가 언제, 어느 때 죽을지 알 수 없을 것 같다. 물론 남편이 날 찾아와 협박하거나 피해를 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두렵지 않다. 이제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난 지금 내가 이혼하게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가장 슬프고 가장 두렵다.

<안명옥의원> 쉼터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나?

<고00> 병원비는 물론 생활 전반에 대해 쉼터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현재 일하는 곳도 선생님들이 일일이 알아봐 줬다. 병원에 다니면서 쉼터에 와서도 말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그때 쉼터 선생님들이 혼자서도 열심히 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격려해줬고, 한국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해 줬다.

<안명옥의원> 컴퓨터에서 많은 피해여성들을 보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을 텐데...

<담당자> 무차별적인 폭력과 언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을 보면 정말이지 어쩔 수 없을 까하는 생각이 든다. 피해 당사자인 이주여성들의 안정적 체류와 법률 및 의료지원의 확대,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한다.

특히 통역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확한 상담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고, 이혼소송을 할 경우 전담 통역인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예산도 없고, 통역인을 고용하기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자원봉사나 인맥을 통해 수소문하는 실정이다.

또한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권 국가의 문화를 저급하다 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는 자녀 교육 시 모(母)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결혼이주민 여성을 나의 아내이자 며느리이자 아이의 엄마로 받아들이고, 한국 남성들도 그들의 배우자인 결혼이주민 여성의 문화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다문화사회 속에서 다양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정부를 비롯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관심과 인식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

일시 : '07.9.19(수)

장소 : 천안 모이세쉼터

<안명옥의원> 지금까지 많이 힘들어했을 텐데...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정말 성심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 말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베트남 여성1> 한국 온지 3년 됐다. 쉼터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정말 상상하기 힘들다. 베트남에서 한국드라마를 보면 한국남성들이 너무 다정하고, 우리가 바라는 남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가면 행복한 가정을 꾸려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겪어 본 남편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다.

무엇보다 난 시어머니가 너무 사납게 대해서 무서웠다.

<안명옥의원> 시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어땠나?

<베트남 여성1> 임신했을 당시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다. 그래서 라면이라도 먹으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먹지 말라고 하며 뭐라 했고, 남편이 몰래 빵과 우유를 사다 줬다.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말만 듣고, 남편이 번 돈은 모두 시어머니가 관리한다. 나는 정말이지 남편과 따로 나와서 단둘이 살고 싶다. 남편은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을 도와 같이 일하면서 행복하게 싶다. 의원님이 여기 방문해 줘서 너무 고맙다. 베트남 여성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베트남에 계신 부모님들도 많이 속상해 하신다. 말도 안 통하는 상황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정말 어렵다.

<베트남 여성2> 내 남편은 술만 먹으면 날 때리고 나가라고 했다. 그리고 폭력 행사 후 그날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날 괴롭혔다. 정말이지 그런 남편이 무섭고 두렵다.

<안명옥의원> 쉽터를 담당하면서 이렇게 어린 신부들의 아픔을 듣고 있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담당자> 한국 시어머니들은 결혼이주민여성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배려와 인식이 부족하다. 그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음식도 잘 먹고, 음식도 잘 하고, 말도 빠른 시일 내에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곤 한다.

또한 한국남성의 연령이 시집오는 이주여성에 비해 높아 15~25세까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어린 신부를 상대로 끊임없는 성관계와 변태적 성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어린 신부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결혼이주민 여성들이 한국으로 시집오기 전에 사전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와 동시에 한국인들도 다문화사회를 인식하고 자신의 배우자 나라를 알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혼이주민 여성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고 안정되고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해 한국에 머물길 원하는 이주여성들을 지원해야 한다.

<안명옥의원> 여러분들을 만나 아픔의 눈물을 봤고, 진심어린 호소들을 들 수 있었다.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 낯선 땅이지만 이 곳에도 좋은 분들이 있음을 알아주고, 더 이상의 피해 여성이 없게 되는 날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할 것을 약속한다.